

72-111
등146



1994년기준

운수업통계조사요령서

- 전 부 문 -

1995. 4 실시

통 계 청

52 179



목 차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5
나. 조사연혁	5
다. 법적근거	5
라. 조사기준시점 및 기간	5
마. 조사표 제출기간	6
바. 조사범위	6
사. 조사단위	7
아. 조사표의 종류	7
자. 조사항목	7
차. 조사방법	8
카. 결과공표	8
타. 조사단계(흐름)	8

2. 조사표 작성요령

가. 일반적 유의사항	9
나. 겸업사업체 작성요령	10
다. 조사대상 사업체와 제외되는 사업체	11

라. 항목별 기입요령(공통)	12
마. 철도·지하철·송유관운송업 조사표 작성요령.....	33
바. 유료도로운영업 조사표 작성요령	36

3. 조사표 심사 및 정리요령

가. 공통사항	38
나. 항목별 검토요령	38
다. 버스 및 택시 조사표 내검 및 제출	42
라. 증감요인 분석표 작성요령	43

4. 조사표류 편철·제출·심사

가. 조사표류 편철	44
나. 조사표류 제출	44
다. 조사표류 심사	44

5. 부호기입요령

6. 주요착오사례

가. 난외사항	50
나. 사업형태	50
다. 자본금 또는 출자금	50

라. 차량보유현황	51
마. 연간수송실적	51
바.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52
사. 운수수입 및 비용	52
아. 부가가치	53
자. 유형고정자산	53
차. 중복조사	53

7. 지역별소득추계조사표 기입요령

가. 조사개요	54
나. 조사표 기입요령	54

< 부록 >

가. 직영과 비직영에 대한 해설	56
나. 감가상각비 해설	57
다. 한국표준산업분류 (1991. 9. 9 제 6차 개정)	60
라. 개인별 조사 및 심사내용 정리표	95

1. 조사 개요

가. 조사목적

운수업부문의 고용·급여·운수장비·운수수입 및 비용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동산업의 구조 및 분포와 경영활동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경제정책수립 및 이의 시책효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나. 조사연혁

중소기업은행에서 64년·69년 2회 실시하여 오던 동 조사를 정부의 통계 일원화 및 강화계획에 의하여 1977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현, 통계청)으로 이관하여 발전 시키도록 결정함에 따라 이를 1976년 기준조사부터 부활 실시하게된 이래 금년조사는 19회 조사가 된다.

다. 법적근거

통계법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10119호)

라. 조사기준시점 및 기간

- 조사기준시점 : '94. 12. 31 현재
- 조사대상기간 : '94. 1. 1 ~ 12. 31 (1년간)
- 조사실시기간 : '95. 4. 1 ~ 4. 30 (1개월간) : 지방통계사무소
'95. 4. 1 ~ 4. 10 (10일간) : 버스 및 택시조합

- 수로안내업 · 선박청소업 · 선박구난업
- 항공기취급업 · 기타항공운수유지서비스업 · 화물운송대행업
- 여행사업 · 선박 및 항공기 중개업 · 포장·검수업

(나) 버스 및 회사택시조합을 통한 조사대상 업종

- 시외버스 운송업 (고속버스 포함) · 전세버스 운송업²
- 시내버스 운송업 · 택시 운송업 (회사택시)

사. 조사단위

- ○ 운수 및 창고업을 경영하는 기업체(이하 사업체라 함)이다.
- ○ 따라서, 기업체내의 단일사업체의 보조단위인 운수업부문의 영업소
 - 지사·사업소등은 본사에서 조사대상 업종별로 포함조사하고 운수 활동이외의 타산업은 제외

아. 조사표의 종류(7종)

- ○ 도로화물 조사표
- ○ 철도·지하철·송유관운송업 조사표
- ○ 버스 및 택시 운송업 조사표
- ○ 수상운송업 조사표
- ○ 항공운송업 조사표
- ○ 운수관련 서비스업 조사표
- ○ 유료도로 운영업 조사표

자. 조사항목

사업체 개황·조직형태·장비보유현황·연간수송실적·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연간운수수입 및 비용·유형고정자산 등 10개 항목

차. 조사방법

(1) 전수조사

○ 시외버스 (고속버스 포함)· 시내버스· 전세버스 및 회사택시 :

버스 및 회사 택시업체에 의한 자계식조사

○ 버스 및 회사택시를 제외한 육상·수상·항공 및 운수관련서비스업:

지방사무소 직원에 의한 면접타계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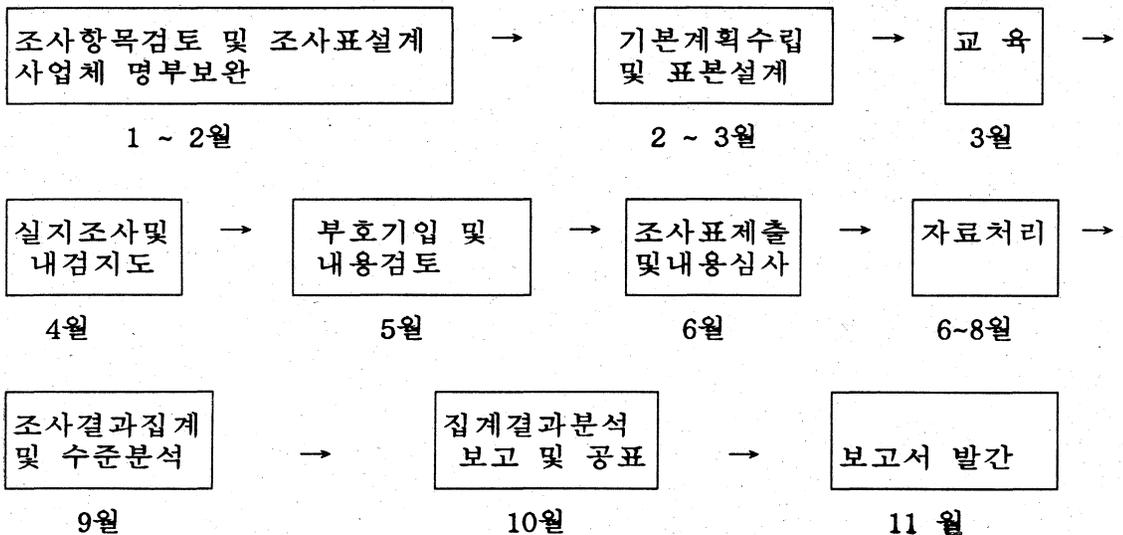
(2) 표본조사 :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 농산물창고

타. 결과공표

(1) 잠정집계결과 : '95.10월중

(2) 확정집계결과 : '94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95. 11월중)

파. 조사단계 (흐름)



2. 조사표 기입 요령

가. 일반적 유의사항

- (1) 조사표의 모든 기재사항은 운수업부문만 기입한다. (단, 겸업사업체에 대하여는 "겸업사업체" 처리 요령에 따라 기입함)
- (2) 조사표의 작성은 항목별 기입요령에 따라 장부에의한 자료를 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이 조사표는 '94.1.1 ~12.31일의 1년간 자료에 의거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산기간이 다를 경우는 직근1년간의 결산자료에 의함)
- (4) 조사표 기재는 반드시 흑색이나 청색의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단위를 점선으로 구분한 각 란에 맞도록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 (5) 이 조사는 금액으로 조사하되, 단위는 "천원"으로 한다.
(단, 종사자수·연간수송실적·차량보유현황은 예외)
- (6) 단위 미만은 4사5입 한다.
- (7) 기재사항이 잘못된 부분은 복선(=)을 긋고 그 위에 정정 기입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란은 사선을 좌상에서 우하로 긋는다(\)
- (8) 조사표상 사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 (☒)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입하지 않는다.
- (9) 조사표 수정시 일부항목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와 관련되는 항목의 내용도 재검토 하여야 한다.
- (10) 각 항목별 합계란의 검산을 철저히 하여 계수의 정확을 기해야 한다.

나. 겸업사업체 작성요령

(1) 운수업과 타산업과의 겸업

(가) 운수업활동 실적만 분리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총수입(매출액)에 대한 운수수입 비율로 배분하여 조사표를 작성한다. (반드시 분리조사를 하여야 함)

(2) 운수업내 겸업종의 경우

(가) 업종간의 분리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나) 분리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기간중 연간 총수입이 많은 업종에 합산한다.

(예)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겸업인 경우 수입이 시외버스가 많다면 시내버스를 시외버스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다) 육상·수상·항공운송업과 운수관련서비스업의 겸업종인 경우에는 운수관련서비스업을 해당관련업종(육상·수상·항공)에 포함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예) 전세버스와 여행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전세버스(차량보유)와 여행사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전세버스에 여행사업을 포함조사하고 여행사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세버스와 여행사업을 겸업하지 않은 순수한 여행사업체만을 여행사업(63061)으로 조사한다.

(예) 부정기항공운송업과 항공운수유지서비스업의 복합업종도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항공운수유지서비스업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항공운수유지서비스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조사대상 사업체와 제외되는 사업체

(1) 조사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업체

- (가) 목재하치장(수면창고)·주류보관업체 및 고철야적장등의 창고업체
(달리 분류되지 않은 창고로 분류)
- (나) 보세창고
- (다) 나용선(외국에서 임차운행하는 선박도 포함)
- (라) 비직영차량 (지입제차량)

(2) 조사에서 제외되는 사업체

- (가) 비영업용인 자가용차량·선박·창고 등만을 가진 업체
- (나) 농업협동조합 창고 (단위조합 포함, 농협중앙회에서 일괄조사)
- (다) 내륙수상 운송업
 - ① 1개사업체가 척당 20 G/T 미만의 선박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
 - ② 거룻배 운영업
- (라) 기타 내륙수상 운송업(관광유람선)
 - ① 비동력선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
 - ② 선박의 크기가 20 G/T미만인 영세업체
- (마) 현지의 사업체가 지점·영업소 또는 출장소일경우(본사에서 일괄조사)
- (바) 정비업소의 렉카운영
- (사) 제조업체내의 비영업용으로 운영되는 창고 등
- (아) 차량임대업(그러나 운전기사가 딸린 승용차 임대는 택시운송업 60221)

라. 항목별 기입요령 (공통)

(1) 사업체 개황

(가) 사업체명

사업체가 "법인"일 때는 등기 또는 등록된 명칭을 말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영업상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말한다.

(나) 창설년월일

법인은 법적설립년월, 개인은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년월을 기입한다. (업종을 변경한 사업체는 업종변경년월, 동일한 업종으로서 사업주 또는 상호만 변경된 사업체는 최초로 창설한 년월을 기입함)

※ 개인업체도 포함(단, 표본업종은 제외)

(다) 대표자명 : 대표자 또는 사업주명을 말한다.

(라) 전화번호 :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전화 1개만 기입한다.

(마) 소재지 : 사업체가 사업을 실제로 경영하고 있는 장소 또는 등록된 행정구역상의 주소를 말한다.

(2) 조직형태

(가) 조직형태라 함은 경영주체의 법적조직 형태를 말한다.

(나) 이 조사에서는 국가기관·공사, 회사법인, 기타법인 및 개인의 4가지로 구분한다.

(다) "법인"사업체라 함은 상법·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법인 등기를 완료하여 법인격을 갖추고 있는 조직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와 민법에

- 의한 재단법인·사단법인과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을 말한다. 이 조사에서는 "회사법인" 과 "기타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상법에 의한 "회사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을 "기타법인"에 포함시킨다.
- (라) "준법인"이란 조직형태상 법인격은 없으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비치관리 하는 개인 및 조직을 말하는 바, 이는 "기타법인"으로 분류된다.
- (마) 개인업체라 함은 법인업체가 아닌 개인 소유의 사업체를 말하며, 1인 소유의 업체는 물론 2인 이상이 동업하는 업체도 포함시킨다.

(3) 사업형태

- (가) '91년 한국표준산업분류(운수업부문) 요령서 부록 참조
- (나) 운수업내 겸업인 경우에는 분리조사가 원칙이나 합산조사하는 경우에는 주업종 한곳에만 ○표하고, 업종별 차량대수 및 선박톤수 등 장비대수를 적요란에 기입한다.
- (다) 사업체명부상의 사업형태(산업분류번호)대로 "○"표하지 말고, 사실상의 사업형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명부상의 사업형태와 다를 때에는 반드시 재확인 한다음 명부상의 사업형태를 정정하고 그 내용을 "적요"란에 상세히 기입한다.

(4) 자본금 또는 출자금

- (가) '94.12.31일 현재 납입완료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한다.
- (나) 조직형태가 "개인" 일 경우 본란은 사선(\)을 긋는다.

(5) 장비보유현황

[도로화물 부문]

(가) '94.12.31일 현재 당해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차량을 말하며, 사업체 소유가 아닌 타인소유의 장비를 임차하여 운행하는 차량도 포함시킨다.

※차량소유기준은 편의상 관리주의 채택.

(나) 차량보유대수는 영업용 차량만 해당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기관별 차량은 사업형태가 ①. ②. ③. ④. ⑤에 해당한다.

톤수별 화물차량은 사업형태가 ①. ②. ③. ④에 해당한다.

(단, 개별 화물은 제외)

※총가동대수는 사업형태가 ①. ②. ③. ④. ⑤에 해당한다.

(단, 개별용달, 개별화물은 제외)

※총운행일수는 개별용달·개별화물에 한하여 기입한다. (개인택시 포함)

(라) 기관별 차량대수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영업용 차량을 기관별·경과년수별 및 소유형태(직영·비직영)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① 차량경과년수

차량등록일로부터 조사기준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말한다.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했을 경우 구입전의 차량등록일을 확인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즉, 중고차량의 구입일로부터 조사기준일까지 경과된 연수가 아니다.

② 소유형태 : 직영과 비직영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마) 톤수별 화물차량 대수

- ① 용달화물과 장의차량 운영업체를 제외한 노선화물·특수화물 및 일반구역화물(개별화물 제외) 운송업체의 차량을 톤수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 ② 화물운송업체(용달화물·개별화물·장의차량운영업체외)는 기관별 차량대수의 합계와 톤수별 차량대수의 합계가 일치하여야 한다.

(바) 총가동대수

- ① 화물운송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영업용 차량중에서 매일매일 실제로 운행한 차량을 누계하여 '94년 1년 동안의 총운행대수를 기입한다.(단, 개별용달·개별화물은 제외)
- ② 1일 1시간이상 운행한 대수도 포함한다.

(사) 총운행일수

- ① 개별용달과 개별화물에 대해서만 기입한다.
- ② 1년동안에 운행을 한 일수를 기입한다.(1시간이상 운행한 경우에도 1일로 계산함)

[수상운송업 부문]

(가) '94. 12. 31일 현재 당해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선박으로서 자기(사업체)소유가 아닌 타인 및 타국소유의 선박을 임차하여 운행하는것(裸傭船)도 포함된다. 즉 선박보유는 소유주의와 관리주의 중에서 편의상 관리주의를 채택한다.

(나) 선박경과년수 : 선박 진수일로부터 '94. 12. 31일까지 경과된 년수를 말하는데, 진수일이 불분명할 때에는 당월 1일, 진수월이 불명할 때에는 당년 1월로 하여 경과년수를 산출한다.

(다)톤수 : 선박 1척당의 총톤수를 말하는데, 총톤수란 선박의 용적을 톤(G/T)으로 표시한 것이다.

(라)선박종류 : 선박이 주로 어떤용도에 운항되는가에 따라 여객선·콘테이너선, 광탄선, 유조선, 일반화물선, 기타로 구분한다.

(마)기관별 : 선박추진기의 종류를 말하는데 디젤기관·소구발동기·증기기관·기타기관(가스터어빈·전기기관)으로 구분한다.

(바)보유척수(기관별)

①유조선은 건조할 때부터 유류수송을 목적으로 탱크(Tank)등 설비를 갖춘 선박이므로, 유조선 이외의 선박이 유류를 수송했다라도 유조선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②추진력이 없는 부선(바지선)은 제외한다(적요란에 척수만을 기입함)

[운수관련서비스업 부문]

(가)'94.12.31일 현재 당해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보관소(야적장)·창고 및 장비를 말하는데, 영업용 이외의 것은 제외한다. 보관소·창고 및 장비는 편의상 관리주의를 채택하므로 자기(사업체)소유가 아닌 타인소유의 것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것도 포함한다.

(나)장비보유현황은 사업형태가 ①~⑦의 업종만 작성하고 그 외 업종은 사선(\)을 긋는다.

(다)경과년수

장비등록일로부터 '94.12.31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말한다.

(라)보관능력

①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보관소 (야적장)·창고의 1회 적정한 보관취급할 수 있는 물량을 말한다.

② 단위

보관물의 단위는 M/T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마)연간보관실적

①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보관소·창고에 의하여 '94년 1년간(결산기간)에 실제로 보관한 1일 누계의 연간총량을 말한다.

② 연간보관실적은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보관소·창고에 조사대상기간 1년간(결산기간)에 실제로 보관한 1일누계의 연간총량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예시와 같이 산출한다.

(예) 벼 1,000M/T을 3월1일부터 3월30일까지 보관하고, 콩 120M/T을 4월10일부터 4월29일까지 보관했으며, 밀 500M/T을 4월16일부터 5월10일까지 보관했다고 하면,

$$1,000M/T \times 30일 = 30,000M/T$$

$$120M/T \times 20일 = 2,400M/T$$

$$500M/T \times 25일 = 12,500M/T$$

$$\text{계} : 30,000M/T + 2,400M/T + 12,500M/T = 44,900M/T$$

그러므로 연간보관실적은 44,900M/T이 된다.

※ 보관 및 창고업(사업형태가 ③-⑦의 업종만 작성)만 작성하고 그의 업종은 사선(\)을 긋는다.

(6)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도로화물 부문]

(가) 종사자

'94. 12. 31일 현재 일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임금·봉급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보수를 받고 그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피고용자수와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합계를 말한다. 여기에는 상용·임시·일용종업원 뿐만 아니라 병가자와 사고로 인한 단기휴가자 및 파업중인자도 포함한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장기결근자 및 군복무자와 고정급여액을 일정한 운수업체로부터 지급받지 않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정류장 등에서 승차권을 판매해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대표원·검표원 등은 제외함)

(나) 급여액

- ① 조사기준기간중 피고용자에게 노무의 대가로 연간 지급된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데, 급여라 함은 현금 또는 현물, 정기 또는 부정기를 불문하고 노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임금·상여금·각종수당 및 생계보조금을 망라한 금액을 말한다. 현금 급여일 경우 세금·조합비 등의 공제금을 포함한 사업체에서 실질상 지출한 급여총액을 말하며, 현물 급여일 경우에는 사업체가 지급당시의 시가에 따라 화폐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② 차량관계종업원의 급여액에는 차량운행시 소요되는 급식비 및 피복비 등은 제외한다. ※차량운행시의 급식비 및 피복비는 "운

수비용"의 항목중 "④ 복리후생비"에 포함됨

- ③ 급여액은 '94년중에 발생한 연간 총액을 기입하여야 한다. 즉, '94년 이전에 체불되었던 급여를 '94년중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고 반면 '94년중에 지급하여야 할 급여가 미불된 것은 포함한다.
- ④ 급여액이 종사자수와 비교하여 현실적인 급여수준에 상당히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당 월별 급여액을 계산하여 재확인한다.
- ⑤ 급여액의 합계는 "운수비용"의 항목중 "② 인건비"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

(다)차량관계 종업원

- ① 운전기사 : 영업용 차량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② 안내원 : 차량운행중여객의 승,하차와 기타여객의 편의를 도모하므로써 운전기사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③ 정비 및 수리공 : 차량의 정비 및 수리를 주된 임무로 하는자로서 당해 사업체 공장에서 차량의 정비 및 수리에 종사하는 사람
- ④ 기타 : 상기분류에 속하지는 않으나 운행 및 유지관리를 위해 종사하는 종업원(세차공)을 말하며, 기타차량관계 종사자중 세차공 이외의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는 "적요"란에 종사자의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라)기타종업원

① 단순노무자

- 화물의 상·하차와 차량으로부터 창고에 이르는 화물의 입·출

고 작업 및 이에 준하는 제작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단순노무자의 1인 일당 연평균급여액은 단순노무자에게 연간 지급된 급여총액을 연간고용된 단순노무자수(연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단순노무자의 연간급여총액 ÷ 연간단순노무자수 = 1인일당 연평균 급여액

- 단순노무자수는 연간급여총액을 1인 일당 연평균급여액으로 나눈 다음 근무일수(300일)로 나누어 산출한다.

※단순노무자수 = 단순노무자의 연간급여총액 ÷ 1인일당 연평균 급여액 ÷ 근무일수(300일)

② 사무직 및 기타

차량운행에 직접관여 하지 않고 관리적인 사무종사자와 이들의 보조원을 말한다. (사무직원·수위·경비원·급사·자가용 운전 기사·차고관리인 등을 말함)

(마)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① 사업주 및 그의 가족으로서 사업에 관련되는 제반업무에 주당 정상작업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되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② 회사법인과 기타법인은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없다.

- ③ 개인 업체는 사실상의 업주가 타직장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사업 감독상 가족중의 1인정도는 정상 작업 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반드시 1인 이상 조사되어야 한다.

[수상운송업 부문]

(가) 선내근무종업원

- 선박직원 : 해기사로서 선장, 항해사, 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를 말한다.
- 부원 :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중 선박직원 이외의 자로서 갑판장 · 갑판수 · 갑판원 · 조기장 · 조기수 · 조기원 · 조리장 · 조리수 · 조리원 · 사무원 · 간호사 등을 말한다.
- 기타 : 위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선내근무종업원을 말한다.
단, 선내근무 종업원 중 대기중인 일반직원 · 부원은 기타란이나 육상근무종업원에 넣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해당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 선내근무 종업원의 급여액에는 선박운항시 지급되는 급식비 및 피복비 등은 제외한다. 선박운항시의 급식비 및 피복비는 『(2) 운수비용』 중 『④ 복리후생비』에 기입한다.
- 선내근무 종업원 중 선박직원 및 부원 이외의 기타 종업원이 있을 경우는 조사표 뒷면 적요란에 종업원의 담당 직책명과 직무 내용을 간단히 설명 기입한다.

(나) 육상근무종업원

- 단순노무자
- 부두에서 선박에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선박으로부터 창고에 이르는 운반작업, 입 · 출고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제작업 등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단순노무자의 1인 일당 연평균급여액은 단순노무자에게 연간 지급된 급여총액을 연간고용된 단순노무자수(연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단순노무자의 연간급여총액 ÷ 연간단순노무자수 = 1인일당 연평균 급여액

- 단순노무자수는 연간급여총액을 1인 일당 연평균급여액으로 나눈 다음 근무일수(300일)로 나누어 산출한다.

※단순노무자수 = 단순노무자의 연간급여총액 ÷ 1인일당 연평균 급여액 ÷ 근무일수(300일)

(다)급여액 : 급여액 합계는 『8.연간운수수입 및 비용』의 항목중 『②인건비』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

[운수관련서비스업 부문]

(가)장비관계 종업원

- ① 중기운전기사 : 소정의 운전면허를 얻어 일정한 사업체에서 영업용 장비 또는 중기 운전이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② 부원(보통선원) : 선박구난업에서 운행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③ 냉장기기사 : 냉장창고업체에서 냉장시설의 운행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기타종업원

- ① 단순노무자 : 이 항목은 사업형태가 ①~⑦인경우에만 해당하고 그 외 업종은 단순노무자의 종업원이 있더라도 『④사무직 및 기타』란에 포함조사함

② 안내원 : 여행사업에 종사하는 통역안내원·국내관광안내원·국
외여행 안내원으로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③ 검수·차량·감정원

포장·검수 및 유사 대리업에서 화물의 이동에 따라 화물의 수
량·품명·하인(荷印)·화물손상·적재 등을 확인점검·감정 또
는 이에 준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④ 사무직 및 기타

관리직인 사무종사자와 그 보조원, 즉 대표·검표원·수위·경
비원·급사·차고관리인 등을 말한다.

(다)급여액 : 급여액 합계는 『8.연간운수수입 및 비용』의 항목중 『②인
건비』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

(7) 연간수송실적

[도로화물 부문]

(가)연간수송실적이란 영업용차량이 연간수송한 총톤수·총거리의 실적
을 말한다. (단, 장의차량은 제외)

① 수송총톤수

화물운송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영업용차량의 운송수단에 의하
여 조사대상기간(1년간)에 실제로 수송한 화물의 총톤수를 말한다.

② 수송총거리

화물운송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영업용 차량의 운송수단에 의
하여 조사대상기간 1년간(결산기간)에 실제로 주행한 차량 개개의
총거리의 합계를 말한다.

[수상운송업 부문]

(가) 정기여객 및 해운화물업체의 경우는 선박 관할 지방항만청에 보고 하는 "운항실적보고서"(월보)의 1년분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단, 여객선의 경우는 보고서상에 화물수송실적이 있더라도 이 조사표의 수송 총톤수에는 기입하지 않는다.

(나) 상기 이외의 선박으로 조사대상기간(결산기간) 동안의 "선박운항일지"가 있는 업체는 운항일지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 수송총인원은 여객운송업의 보유선박에 의한 연간 수송한 총톤수를 말한다.
- 수송총톤수는 화물운송업의 보유선박에 의한 연간 수송한 총톤수를 말한다.
- 수송총거리는 여객 및 화물운송업부문에 한하여 작성한다.

※ 수송총톤수 및 수송총거리 산출

- 직영업체는 회사에서 해당 시·도 운수과에 보고한 "자동차운송보고서"(월보)의 1년분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 직영업체가 아닌 회사로서 운수실적보고시 비직영차량에 대한 수송실적을 제외시킨 경우는 비직영차량의 수송실적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이미 보고된 실적에 합산하여 보고한다.
- 1년간 비직영 차량대수가 일정하였을 때는 비직영차량 1대당의 연간수송실적을 계산하고, 이에 차량대수를 곱하여 추정 산출 한다.
- 비직영차량대수가 일정치 않을때(예:1월 20대,5월 15대,12월 20대)는 비직영차량의 1대당의 월별 수송실적을 계산하고, 이에 차량수를 곱하여 추정 산출 한다.

(8) 연간운수수입 및 비용

연간운수수입 및 비용은 이 조사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조사 사항이며 이는 운수업체 결산자료(손익계산서)의 각 항목분류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내용은 동일하므로 각 항목해설을 숙지하여 사업체 결산자료의 각 항목을 이 조사항목에 맞도록 분류하여 작성 한다.

[도로화물 부문]

(가)운수수입

- ①조사대상기간중 사업체의 운수활동으로 얻어진 경상적인 영업수입을 말한다.
- ②부동산 투자등에서 얻어진 영업외 수입은 "9.임대수입"에 기재함.
- ③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운수비용

조사대상기간중 운수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영업비용(일반관리비포함)을 말한다.

①재료비

재료비란 운수활동을 위하여 소비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매입한 재료구입 비용중 실제사용액을 말하는 바, 이는 연료비와 기타 재료비로 구분한다.

○ 연료비

- 영업용차량의 운행에 사용된 휘발유·경유·LPG 등으로 구분 기입한다.

- 소비된 금액만 조사하고 구입액중 미사용분인 비축분은 제외하여야하며, 기타란에는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등의 소비액을 조사조사한다.
- 영업용 차량 외의 연료비 (승용차용·자가발전·난방용 등)는 『⑫ 잡비』에 기입한다.

○ 기타재료비

외부로부터 매입된 부분품으로서 그대로 차량에 부착시켜 그 구성 부분이되는 타이어·베어링 등의 부속품비, 내용년수 1년 미만, 5만원 미만 상당의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등을 말한다.

② 인건비

- 도로화물 운송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운전기사·정비 및 수리공 등의 차량관계종업원과 사무직원 및 잡급 등의 기타 종업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특근수당 등의 각종 수당 및 잡급 등이 포함된다.

- 인건비는 『7.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의 차량관계종업원 및 기타 종업원의 급여액 합계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당년도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기입하되, 이 계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을 기입한다.

④ 복리후생비

전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된 법정복리비·복리시설부담액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예) 장학금·경조비·종업원의 건강비·손해보험·치료보조비·

각종위생·보건비·각종보조금등(퇴직금은 별도항목으로 조사)

⑤ 감가상각비 : 유형고정자산(토지·건설가계정 제외)인 건물·기계장치·차량 및 운반구등에 대한 연간('94년도)감가상각액을 기입

⑥ 지급임차료 : 동산·부동산등을 일정한 기간동안 임차 또는 사용했을경우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건물·차량 및 운반구와 토지를 구분하여 기입한다)

예) 영업용토지·공장·건물·기계장치·운반구 등의 임차료

⑦ 보험료 : 자동차·건물(건물부속설비 포함) 및 비품등에 대하여 사업체가 지불한 화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종업원의 후생을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는 『④.복리후생비』에 기입한다.

⑧ 세금·공과금

영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자동차세·재산세·인지세·등록세·취득세 등의 제세금과 상공회의소비·조합비·적십자비 등의 각종 공과금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소득세 및 고정자산원가에 포함되는 등록세 등은 제외한다.

⑨ 수선비

○ 사업체의 건물·차량·기계장치·공구 등의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선·수리를 외부에 의뢰하였을 경우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수익적 지출)

○ 건물의 증축이나 기계기구의 개조로 인해 그 자산의 가치가 증

식된 경우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치증가이므로 『10. 유형고정자산』의 『연간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자본적 지출)

⑩ 사용료

여러 운수사업체가 정류장(지방정류소 포함)을 공동사용할때 승차권 판매(매표)업무를 정류장에서 대행할 경우, 사업체에서 정류장에 지급된 매표에 대한 수수료·면허수수료·그밖에 차량검사료 등을 말한다.

⑪ 대손상각

외상대출금·받을어음·그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중 회수할 수 없는 경상적인 금액을 말한다.

⑫ 잡비

- 이상 열거한 비용 이외의 비용으로 수도광열비·광고선전비·접대비·소모품비·비영업용차량사고비·통신비·사고비·여비·교통비·주차장사용료 등의 제비용을 말한다.
- 영업비용중 외국(정부기관 및 개인)에 지불한것 중 인건비·복리 후생비·임차료·조세 등은 잡비에 포함한다.

(다)영업이익

사업체의 경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운수수입에서 운수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라) 납부부가가치세

- ①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신고서 (예정·확정·영세율 등 조기환급)상의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발생기준의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를 기입한다.
- ② 과세 특례자의 경우는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상의 차감 납부할 세액을 기입한다.

[수상운송업 부문]

(가) 운수업체가 법인인 경우

이 조사항목은 각 해운업체 결산자료의 각 항목분류와 일치하지는 않으나 내용은 동일하므로 각 항목해설을 숙지하여 사업체 결산자료의 각 항목을 운수업통계조사 항목에 맞도록 분류작성해야 함.

(나) 운수업체가 개인인 경우

① 선주가 장부(현금출납부 및 그에 준하는 장부 등)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따라 조사한다.

② 선주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정기여객 및 화물선(내·외항선)은 이미 보고된 "운항실적보고서"(월보)의 수입액 및 주요지출액(유류·선원비·수리비 등)을 참고로 1년(결산기간)분을 합산하되, 선주의 사업특수성(선박사고로 인한 운항정지·일정한 기간의 휴업 등)을 고려하여 추정 작성한다.

(다)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임차료(외국용선료제외)는 『⑫ 잡비』에 포함시킨다.

(9) 임대수입

운수업체에서 경상적인 영업활동이외에 토지·건물·운수장비의 대여로 수입된 금액을 말한다. 즉 영업외수입중 토지·건물·장비 및 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등의 임대수입을 조사한다.

(10)유형고정자산

유형고정자산이란 구체적 형태를 가진 고정자산으로 차량 및 운반구·토지·건물 및 구축물·기계장치 및 기구 등을 말한다. 토지·건물등의 부동산 중 단순히 부동산 투자를 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토지

사무소·차고·정비공장·사택·운동장 등의 토지를 말하는데 사무소·기숙사·공장·창고·사택 등을 위한 토지개발비(정지·매축 등의 공사비 및 수익자 부담금)등도 포함된다.

(나)건물 및 구축물

①건물: 토지에 직접 건설한 건축물과 그일부인 영속성 부속설비를 말한다(사무소·영업소·기숙사·공장·창고·사택·기타 부속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승강기·냉방·조명·통풍설비 등의 부속설비)

②구축물: 토지에 정착된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도로·도크(Dock)·궤도(軌道)·안벽(岸壁)·다리·담장·댐·수도·송유관 등)

(다)기계장치 및 기구·비품

① 기계 : 동력을 받아서 외부의 대상물에 작업을 가하는 기계의 단위로 발전기·전동기·공작기계 등을 말한다.

② 장치 : 대상물을 내부에 수용하여 이것을 변질·변형시키기 위한 설치로서 연소(燃燒)·화학·냉동장치 등을 말한다.

(라)차량및 운반구:버스 및 택시, 여객선·화물선·유조선 등의 선박과 기타운반구등의 차량과 렉카등의 운반구를 말한다.

(영업용 이외의 선박 및 운반구도 포함됨에 유의)

(마)건설가계정 : 건설가계정이란 미완성의 유형고정자산. 즉 건물 및 자동차 등의 매입을 위하여 경비는 지출되었으나 완성이나 도착이 되지않아 완성 및 도착시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임.

(바)연초잔액: '94. 1. 1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써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사)연간증가액

① '94년 1년간에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설치 및 증·개축을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구입의 경우는 운임·설치비를 포함한 구입가격으로, 양수받은 것은 양수 당시의 시가로, 자가(自家)건설 경우에는 1년간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②건설가계정으로부터 건물이나 기계장치 계정으로대체되어온 것도 취득으로 간주한다.

(아)연간처분 및 손해액 (연간감가상각액 포함)

① '94년 1년간에 유형고정자산의 매각·양도한 금액과 재해 등으로 인한 실질적 감소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매각의 경우는 매각

액을, 양도한 경우는 양도액을, 재해·도난 등으로 인하여 유형 고정자산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원인의 발생 당시에 매각할수 있었던 시가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② 건설가계정에서 건설완료·차량도착 등으로 건물이나 차량계정으로 대체한 것은 건설가계정의 감소액에 기입한다.

③ 연간 감가상각액은 반드시 '94년 당해년도(1년간)의 감가상각액 또는 감가상각충당금만 기입한다.

※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액을 기입해서는 안된다.

(자)연말잔액

① '94.12.31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한 미상각 잔액을 말한다. 장부가 없을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다.

② 연말잔액 = 연초잔액 + 연간증가액 - 연간처분 및 손해액 - (연간 감가상각액 포함)

③ 비직영차량이 많은 화물운수업체의 경우는 연말잔액을 차량대수로 나누어 차량 1대당 가격을 산출하여 비직영차량분의 누락여부를 확인·수정 기입하여야 한다.

(11) 적요

(가)조사자료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변화가 있을경우 그 요인을 기입.

(나)적자일 경우 그 요인을 기입한다.

(다)사업체 경영에 있어 전년도와 큰 변동사항(시설확장·종사자의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입한다.

(라)기타 사업체의 특이한 사항을 기입한다.

마. 철도 · 지하철 · 파이프라인 운송업 조사표

- (1) 도시간철도 조사표는 본청분(본청 및 본청현업기관, 철도기술연구소, 철도공무원교육원)과 지방철도청분(서울, 부산, 대전, 순천, 영주) 별로 작성하되 이를 종합한 총괄분도 함께 제출한다.
- (2) 철도전문대학 · 철도로반건설(건설창) · 보수활동(정비창)에 관계되는 부분은 이 조사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계되는 운수수입 · 운수비용 · 종사자 · 급여 · 유형고정자산 · 장비등은 모두 제외된다. (단, 정비창의 일반직 종사자는 운수비용중 인건비와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본청 또는 해당지방청에 포함하여 조사함)
- (3) 운수활동을 영위하는 부문을 대상으로 함에따라 철도청의 기업 회계 방식에 의거 작성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내용과 다소 상이함.
<예> 영업수익에서 일반회계지원금은 미포함(손익계산서)
<예> 철도전문대학, 건설창, 정비창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제외됨.
(손익계산서)
<예> 철도전문대학, 건설창, 정비창의 유형고정자산은 제외됨(대차대조표)
- (4) 운수수입은 당해년도('94년도)의 운수수입 실적('94철도연보 703p 참조)을 여객수입, 화물수입(수소화물+화물), 기타영업잡수입으로 구분작성
- (5) '94년 1년동안 파이프라인 운송업의 영업 활동 실태를 결산자료와 관계장부에 의해서 작성한다.

(6) 주요항목 해설

(가) 종사자

- ① 94.12.31현재 철도청 및 각 지방철도청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말한다 (정비창, 건설창, 철도전문대학 종사자는 제외 단, 정비창의 일반직은 포함) 여기에는 정규직 공무원(일반직 및 기능직 고용원)과 잡급직원을 포함하며 이외 병가자 사고로 인한 휴가자도 포함한다.
- ② 파이프라인 운송업의 종사자는 기술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하여 기술직은 본사와 현장 근무자를 모두 포함하며 장비관계종사자의 기타(기술직)란에 기입하며, 사무직 종사자는 기타 종사자의 행정직란에 기입한다.

(나) 급여액

- ① 급여라 함은 조사기준 기간중 피고용자에게 근무의 대가로 지급된 연간급여의 총액을 말하는바 현금 또는 현물·정기 또는 부정기를 불문하고 노무의 대가로 지급된 봉급·임금·상여금·각종수당 및 생계보조금(급여성 정보비)을 망라한 금액을 말한다.
- ② 급여액에는 세금·기여금·의료보험료·노동조합비 등의 각종 공제금을 공제하기 이전의 지급총액을 기재한다.
- ③ 급여액 조사에서도 정비창의 기능직, 건설창과 철도전문대학 직원의 급여액은 제외
- ④ 직종별(기관사, 기관조사 등)의 연간급여액 구분작성이 곤란할시에는 직종별의 평균급여액×직종별 종사자수로 환산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함. 따라서 『연간급여액÷종사자수÷12개월』은 종사자 1인당 월평균급여액이 되므로 급여액이 지급되지 않은 종사자는 여기에서 제외함.

- ⑤ 철도청의 급여액 조사에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연가보상비, 체력단련비등의 급여액이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조사되지 않도록 할것 (단, 피복비, 일반후생비는 복리후생비 항목에 조사토록 할것.)

(다)운수수입 및 비용

- ① 조사대상기간중 철도·지하철의 운수활동과 송유관운영으로 발생한 모든 영업수입 및 비용을 말하며 영업외수입 및 비용은 제외한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같이 철도전문대학·철도청이 직영하는 철도차량 및 기지건조·분해수리·철도로반건설 및 보수활동에서 발생한 영업수입 및 비용은 제외한다.
- ② 영업비용 중 외국(정부기관 및 개인)에 지불되는 영업비용이 있으면 이 조사표의 비용항목별로 별도 작성하여 조사표에 첨부하여 제출함.
- ③ 파이프라인 운송업의 운수비용중 전력사용료(손익계산서상)는 재료비의 전력비란에 조사하여야 한다.
- ④ 파이프라인 운영업의 연간 영업수입은 기타 영업수입란에 기재하고 운수수입 합계란에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한다.

(라)유형고정자산

- ① 유형고정자산이란 구체적 형태를 지닌 자산으로서 차량 및 운반구·토지·건물 및 구축물·기계장치 및 기구를 말한다.
- ② 이 조사에서 제외되는 부문인 철도전문대학, 건설창, 정비창 등에서 소유(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 ③ 파이프라인운송업에서 배관설비인 송유관 시설은 유형고정자산의 건물 및 구축물란에 조사되어야 하며 저유소 및 가압장 등은 기계장치란에 조사한다.

바. 유료도로운영업 조사표

- (1) '94년 1년동안 한국도로공사의 유료도로 영업활동실태를 항목별 기입요령을 참조하여 결산자료와 관계장부에 의하여 작성한다.
- (2) 조사표는 한국도로공사 본사 및 지사별로 작성하되, 본사에서는 본사와 각 지사별 조사표를 종합한 총괄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단, 수탁건설·연도개발사업·부대사업 등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 (3) 본사에서 작성하는 총괄분조사표의 각 항목은 각 지사 및 본사관할분조사표의 각 항목간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 (4) 주요조사항목 해설

(가) 종사자

- ① '94.12.31 현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임금·봉급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보수를 받고 한국도로공사에 고용되어 있는 피고용자를 말한다.
- ② 사무직이란 한국도로공사 본사 및 각 지사에서 일반사무에 종사하는 자(사장·1-5급직원 등)를 말한다.
- ③ 수탁건설·연도개발사업·부대사업 등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은 이조사에서 제외한다.

(나) 급여액

- ① 급여라 함은 조사대상기간중 피고용자에게 노무의 대가로 지급된 연간급여의 총액을 말하는데 현금 또는 현물·정기 또는 부정기를 불문하고 노무의 대가로 지급된 봉급·임금·상여금·각종수당 및 생

계보조금을 말하며 이의 미불금도 포함한다.

- ② 급여액에는 세금·기여금·노동조합비 등의 각종 공제금을 공제하기 이전의 수령총액을 기재한다.

(다)운수수입 및 비용

- ① 조사대상기간중 한국도로공사의 유료도로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수입과 영업비용을 말하며 영업외비용과 영업외수입은 제외한다.
- ② 수탁건설·연도개발사업·부대사업 등의 영업비용중 유료도로 수입으로 지불되는 영업비용은 이 조사표의 비용항목별로 별도로 작성조사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라)유형고정자산

- ① 유형고정자산이란 구체적 형태를 가진 자산으로서 차량 및 운반구·토지·건물 및 구축물·기계장치 및 기구 등을 말한다.
- ② 이 조사에서 제외되는 부분(수탁건설·연도개발사업·부대사업 등)에서 소유(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 ③ 토지·건물 등 유형고정자산 중 비업무용 토지·건물은 제외한다.

※ 조사표 작성완료후에는 반드시 관련항목간 내용검토를 충분히 한다.

3. 조사표심사 및 정리요령

가. 공통사항

- (1) 조사표가 오손되었을 때에는 다른 조사표에 옮겨 다시 작성한다.
- (2) 조사표상의 숫자 기록이 정확한가를 검사한다.
- (3) 업종(산업세세분류)별로 철해진 조사표가 조사표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매수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 (4) 사업체명부상 사업체 고유번호와 조사표상의 사업체 고유번호가 일치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 (5) 급여액은 종업원의 현실적인 급여수준에 미달되어서는 안되므로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을 계산하여 합리성 여부를 검토한다.
- (6) 조사표의 기재내용을 외부사람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통계법 참조)
- (7) 대규모 사업체의 조사표는 항목간에 불균형이 없도록 전년도 자료와 대조하고 증감요인을 조사표 적요란에 상세히 기입한다.

나. 항목별 검토요령

(1) 사업체 개황

사업체명·대표자명·소재지·전화번호 등이 사업체명부상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사업체명부를 보완하였는가 확인한다.

(2) 조직형태

(가) 조직형태가 국가기관 및 공사·회사법인·기타법인 중에 해당되는 경우 『4. 자본금 및 출자금』란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하고 『7항(3)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나) 개인택시·개별용달·개별화물은 반드시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란에 기입되었는가 확인한다.

(3) 사업형태

반드시 주업종 1개에만 "○"표시되어 있는가 확인한다.

(4) 자본금 또는 출자금

단위가 『천원』임에 유의하고 조직형태와 연관하여 검토한다.

(5) 장비보유 현황

(가) 경과년수별 차량대수의 합계가 일치하는가 검토한다.

(나) 버스 및 택시 조사표는 기관별 차량대수와 용도별 차량대수가 일치하는가 검토한다.

(다) 선박의 경과년수별 척수합계와 기관별의 여객선, 컨테이너선, 광탄선, 유조선, 일반화물선, 기타의 수 합계가 일치하는지를 파악한다.

(6) 연간수송실적

(가) 단위가 『천』(명, Km, 회, M/T)단위로 기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나) 수송총인원

여객운송업의 경우에만 기입되어야 한다. (화물운송업인 경우에는 『\』으로 표시)

(다) 총운행횟수

여객운송업의 경우에만 기입되어야 한다. (화물운송업인 경우에는 『\』 으로 표시)

(라) 수송총톤수

화물운송업인 경우에만 기입되어야 한다. (여객운송업의 경우 『\』 으로 표시)

(마) 수송총거리

여객 및 화물운송업 모두 기입되었는가 확인한다.

(7)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가) 종사자수

- ① 기타 종업원수가 차량관계 종업원수 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확인하여 그 사유를 조사표 적요란에 기입한다,
- ② 사업형태와 관련하여 직종별 종업원수를 검토한다.
예) 택시운송업의 경우에는 안내원 및 조수가 있을 수 없다.
- ③ $\text{단순노무자수} = \text{연간급여총액} \div \text{1인일당 연평균 급여액} \div 300\text{일}$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되었는가 확인한다.
- ④ 보유차량대수와 관련하여 운전기사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 ⑤ 개인택시 · 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경우에 운전기사를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란에 기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나) 연간급여액

- ① 연간급여액 총계가 『운수비용중 인건비』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② 직종별로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을 산출하여 합리성 여부를 검토한다.
- ③ 종사자수 및 급여액에 있어서 전체의 란을 가로·세로로 검토하여 합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8) 연간 운수수입 및 비용

(가) 운수수입

- ① 차량 1대당 월평균 수입을 산출하여 합리성 여부를 검토한다.
- ② 부가가치 항목의 합계가 운수수입보다 많을 경우에는 운수비용의 각 항목이 바르게 작성 되었는가를 검토한다.

(나) 운수비용

- ① 기관별 차량대수와 연료비의 관계를 검토한다. 즉 디젤엔진인 경우에 비용중 경유란에 기입되었는가(휘발유엔진→휘발유, L.P.G엔진→L.P.G)를 검토한다.
- ② 기관별(엔진별)차량 1대당 월평균 연료비를 산출하여 합리성 여부를 검토한다.
- ③ 누락시킨 항목이 있는가를 검토한다.
- ④ 소계·계·합계의 재검토 및 운수수입에서 운수비용의 합계를 차감하여 영업이익과의 일치여부를 검토한다.
- ⑤ 영업비용중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게 지불된 인건비·복리후생비·임차료(외국선박용선료 제외), 조세등은 잡비로 처리되었는가 확인한다.

(다) 유형고정자산

① 연말잔액이 다음 산식에 적합한가를 검토한다.

$$\text{④연말잔액} = \text{①연초잔액} + \text{②연간증가액} - \text{③연간처분액 및 손해액 (연간감가상각액 포함)}$$

② 조사기간의 당해년도 감가상각액만을 조사하였는가를 검토한다.

③ 각 항목별로 가로·세로의 합계가 맞는지를 검토한다.

④ 겸업사업체에 있어서는 유형고정자산의 분할이 타당성있게 분리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버스 및 택시조사표 내검 및 제출

각 지방사무소에서는 각 시·도 버스 및 택시조합에서 작성된 조사표에 대하여 내검을 실시하여 제출한다.

(1) 보완조사

조사표 표지상의 제출내역이 정확한가를 확인한 후 미조사 업체에 대해서는 각 시·도 버스 및 회사택시조합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업체명부를 입수하여 각 지방사무소에서 보완 조사토록 한다.

(2) 조사표 심사 및 정리 (3.조사표 심사 및 정리요령참조)

(3) 증감요인 분석표 작성(목차3의라번의 증감요인 분석표 작성요령 참조)

(4) 부호기입(5. 부호기입요령 참조)

4. 조사표류편철·제출·심사

가. 조사표류 편철

(1) 작성완료된 모든 조사표는 시도별·업종별(사업체고유번호)순으로
철한다.

(2) 표본조사

① 개인택시·개별용달·개별화물

개인택시(시·군부), 개별용달(시·군부), 개별화물(1.2.3그룹)은 각각
분리하여 각각 1권으로 철한다.

② 농산물 창고업 : 시도별로 분리하여 철한다.

(3) 지역소득추계 조사표

별도 철하여 제출한다(버스 및 택시조합분도 같음)

나. 조사표류 제출

(1) 버스 및 택시운송업

① 각 시도 버스 및 택시조합에서 조사된 조사표는 심사 및 정리,
부호기입을 완료한후 우리청 조사분과 함께 제출한다.

② 만약 미조사된 사업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완 조사한다.

(2) 편철이 완료된 조사표는 사업체명부(표본조사용 사업체 명부 포함)

및 증감요인 분석표와 함께 제출한다.

다. 조사표류 심사 (6.1 ~ 6.15 중)

(1) 조사표 접수시 미비조사표로 지적된 조사표는 재조사하여 증안에
제출 한다.

5. 부호 기입 요령

가. 부호기입은 조사표·사업체명부가 완전히 작성된 후에 기입한다.

나. 부호기입은 모두 적색 싸인펜으로 정확하게 기입한다.

(1) 산업분류번호

조사항목『3.사업형태』란에 "○"표시된 업종의 산업 세세분류번호를 기입한다.

※ 산업세세분류번호 및 사업형태

산업세세분류번호	사 업 형 태
60	육 상 운 수 업
6010	도시간 철도 운송업
60100	도시간철도운송업
6021	정기노선여객육상운송업
60211	구역내철도운송업
60212	시외버스운송업
60213	시내버스운송업
6022	비노선여객육상운송업
60221	택시운송업
60222	전세버스운송업
6023	도로 화물 운송업
60231	노선 화물

산업세세분류번호	사 업 형 태
60232	특수 화물
60234	일반 구역 화물
60235	용달 화물
60236	장의차량 운영업
6030	파이프라인 운송업
60300	파이프라인 운송업
61	수 상 운 송 업
6110	해 상 운 송 업
61101	내항 여객
61102	내항 화물
61103	외항 여객
61104	외항 화물
6120	내륙 수상 운송업
61201	내륙 수상 여객
61202	내륙 수상 화물
61209	기타 내륙 수상
62	항 공 운 송 업
6210	정기 항공 운송업
62100	정기 항공 운송업
6220	부정기 항공기 운행사업

산업세분류번호	사 업 형 태
62201	부정기 항공운송업
62202	항공기 임대사업
63	운 수 관 련 서 비 스 업
6301	화 물 취 급 업
63011	육상 화물 취급업
63012	수상 화물 취급업
6302	보 관 및 창 고 업
63021	보통 창고업
63022	냉장 창고업
63023	위험물품 보관업
63024	농산물 창고업
6302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6303	육 상 운 수 유 지 서 비 스 업
63032	여객 자동차 정류장업
63033	화물 자동차 정류장업
63034	유 료 도 로 운 영 업
6304	수 상 운 수 유 지 서 비 스 업
63042	수로 안내업
63043	선박 청소업
63044	선박 구난업

산업세세분류번호	사 업 형 태
6305	항공운수유지 서비스업
63052	항공기 취급업
63059	기타항공운수유지서비스업
6306	여 행 사 업
63061	여 행 사 업
6309	기타운수관련 서비스업
63091	화물운송 대행업
63092	선박 및 항공기중개업
63093	포장·검수 및 유사대리업

(2) 사업체고유번호

- 사업체명부상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이기한다.
- 버스 및 택시조합분도 사업체 명부를 활용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 단, 표본조사인 개인택시·개별용달·개별화물의 사업체고유번호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입한다.

사업체 고유번호

		-					
--	--	---	--	--	--	--	--

(①) - (②) (③)

①란 → 두자리에는 시·도 부호를 기재한다.

②란→ 두자리에 개인택시는⑨ { 시부는 ①
군부는 ②

②란→ 두자리에 개별용달은④ { 시부는 ①
군부는 ②

②란→ 두자리에 개별화물은⑦ { 1그룹 ①
2그룹 ②
3그룹 ③

③란→ 세자리에는 표본 업종별, 시·군부별로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 농산물창고업은 사업체명부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기입한다.

(3) 구분

구분란에는 개인택시·개별용달에 대한 시부·군부 및 농산물 창고업의 전수·표본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택시·개별용달 및 농산물창고, 개별화물에 해당하는 조사표 구분란에 다음과 같이 기입한다

○ 개인택시 { 시부 - 10
군부 - 20

○ 개별용달 { 시부 - 30
군부 - 40

○ 농산물창고 { 전수 - 50
표본 - 60

○ 개별화물 { 1그룹-71
2그룹-72
3그룹-73

○ 고속버스 - 80

(4) 행정구역부호: 사업체 소재지의 행정구역부호를 사업체명부와 조사표가 일치하도록 기입.

(5) 조직형태: 항목『2.조직형태』란에 "○"표된 해당번호를 기입한다.

○ 국가기관 및 공사- 1

○ 회사법인 - 2

○ 기타법인 - 3

○ 개인 - 4

6. 주요 착오 사례

가. 난외사항

- (1) 사업체고유번호가 누락된 경우
- (2) 조직형태번호와 조직형태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
- (3) 조직형태가 개인인데 『7.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에 무급가족종사자가 없는 사례
- (4) 조직형태가 법인이면서 『7.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에 무급가족종사자가 있는 사례

나. 사업형태

- (1) 겸업종 사업체의 경우 사업형태를 두곳에 ○표한 사례
예) 수상화물취급업과 육상화물취급업을 겸하고 있을때 두곳에 ○표를 하였는바, 이는 주업종 한곳에만 ○표를 하여야함.
- (2) 산업세분류와 사업형태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
예) 산업분류에는 기타내륙수상운송업(61209)으로 하였고 사업형태는 내륙수상여객(61201)에 ○표를 하였음.

다. 자본금 또는 출자금

- (1) 법인업체이면서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누락된 사례

라. 차량보유 현황

- (1) 비영업용 차량을 조사한 사례
- (2) 도로화물운송업의 경우 기관별 차량대수와 톤수별 화물차량대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
- (3) 도로화물운송업에서 소유형태와 경과년수별 차량대수의 불일치
- (4) 버스의 경우 『5. 차량보유현황』에서 기관별의 디젤엔진이 아닌 경우
- (5) 택시의 경우 기관별의 L.P.G 엔진이 아닌 경우(개인모범택시 제외)
- (6) 버스 및 택시에서 경과년수별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
- (7) 선박의 경과년수별 척, 톤수의 합계가 불일치한 사례.
- (8) 개인택시·개별용달·개별화물의 경우 총가동대수가 기입되거나 총운행일수가 누락된 사례와 총운행 일수가 365일을 초과 하는 사례

마. 연간수송실적

수송총인원·수송총거리·총운행횟수간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조사된 사례

- 예) 회사택시 조사표에 있어서 『수송총인원 ÷ 총운행횟수』가 5명 이상으로 조사되었는 바, 이는 불합리한 자료(1미만 또는 5인 이상은 불합리)
- 예) 버스조사표에 있어서 『수송총거리 ÷ 총운행횟수』가 20km 미만으로의 조사는 불합리한 조사임

바.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 (1) 개인택시·개별용달·개별화물업체에 있어서 종사자와 차량보유대수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와 연간급여액이 조사된 사례
(조사대상이 사업주가 아니라 지정된 차량이므로 종사자수와 차량대수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연간급여액도 조사될 수가 없음)
- (2) 단순노무자 산출에 있어서 연인원수로 착오조사하는 사례
예) "갑"회사에서 지난 1년간 단순노무자에게 지급한 연간급여총액이 1,620만원, 1인일당 연평균급여액 9,000원, 연간근무일수가 300일인 경우 단순노무자수 산출은 다음과 같다.
단순노무자수 = 1,620만원 ÷ 9,000원 ÷ 300일 = 6명 (○)
단순노무자수 = 1,620만원 ÷ 9,000원 = 1,800명 (×)
- (3) 시외버스(고속.전세.시내)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스페어) 기사가 조사된 사례 (대기기사는 회사택시업종에 한함.)
- (4) 여객자동차 정류장업에 단순노무자가 조사된 사례(여객자동차 정류장업에서 단순노무자는 기타종사자로 분류하여야 함)

사. 운수수입 및 비용

- (1) 기관별 엔진의 종류와 연료비란의 종류와 일치하지 않는 사례
예) 버스의 경우 디젤엔진에 체크하고 휘발유의 사용비용을 조사한 사례
- (2) 연간급여액과 "운수수입 및 비용"란의 인건비와 일치하지 않는 사례

아. 부가가치

부가가치란 운수활동을 통하여 새로이 창출, 부가시킨 순 생산개념의 가치로서 회사의 실소득을 나타내는 바, 이는 매출액에서 외부구입가치 (중간재비용)를 뺀 것이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는 운수비용항목을 중심으로 가산법에 의하여 산정 하였음. (조사표상의 부가가치 항목을 합산)

부가가치 = 인건비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 복리후생비 + 감가상각비
+ 임차료 +세금.공과금 + 대손상각 + 국내선박 용선료 + 영
업이익 + 납부부가가치세

- (1) 부가가치항목의 합계가 운수수입액 보다 큰 사례
- (2) 부가가치 항목의 합계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사례

자. 유형고정자산

- (1) 연간감가상각액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착오조사하는 사례
- (2) 연말잔액 = 연초잔액 + 연간증가액 - 연간처분 및 손해액 (연간 감가 상각액포함)의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 사례

차. 중복조사 및 업종변경

- (1) 산하지방영업소를 본사와 중복조사하는 사례
(대한통운·한진·세방기업·동방 등은 서울 본사에서 일괄 조사함)
- (2) 주업종으로 조사하지 않은 사례
(여행사업과 화물운송대행업을 겸업하는 사업체를 전회 조사시에 주업종을 여행사업으로 하고, 금회 조사때에는 화물운송대행업을 주업종으로 조사하여 시계열이 맞지 않는 경우)

7. 지역소득추계조사표 기입요령

가. 조사개요

(1) 조사목적

지역별 주민소득 추계작성의 일환으로 운수업부문의 총생산액 및 부가 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지역별 운수수입·비용자보수·감가상각비를 조사하여 지역경제분석을 위한 도내 총생산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 조사대상(11개업종)

· 도시간철도	· 시외버스	· 전세버스
· 특수화물	· 일반구역화물	· 용달화물
· 정기노선도로화물	· 유료도로	· 선박청소업
· 육상화물취급업	· 화물운송대행업	

(3) 조사항목 : 각 사업체의 지역별 운수수입·비용자 보수 및 감가상각비

(4) 조사방법 : 동 운수업통계조사와 병행조사 실시

나. 조사표 기입요령

(1) 조사표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업체의 소재지(본사)에 관계없이 각 업체의 운수업부문의 영업소, 수리공장, 지사, 사무소, 출장소 등에서 발생된 것은 각 해당지역에 포함시켜 작성한다.

(나) 경리업무가 본사에서 일괄처리되어 사업체별(지사, 영업소, 수리공장, 사무소·출장소등) 파악이 곤란할 경우 아래와 같은 산식을 이용하여 지역별로 배분하여 기입한다.

- ① 운수수입 : 운수업통계조사표의 운수수입을 지역별로 배분 기입함.

$$\text{지역별 운수수입} = \text{총 운수수입} \times \frac{\text{지역내 승객인원(지역내 화물톤수)}}{\text{총 승객인원(총 화물톤수)}}$$

- ② 피용자보수 : 운수업통계 본조사표상의 인건비·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및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을 지역별로 기입한다.

$$\text{지역별 피용자보수} = \text{총 피용자보수} \times \frac{\text{지역내 종사자수(지역내 급여액)}}{\text{총 종사자수(총 급여액)}}$$

- ③ 감가상각비 : 운수업통계 조사표상의 『운수비용』중 『⑤감가상각비』를 지역별로 기입한다.

$$\text{지역별 감가상각비} = \text{총 감가상각비} \times \frac{\text{지역내 유형고정자산}}{\text{총 유형고정자산}}$$

(2) 조사표 제출요령

지역소득추계 조사표는 운수업통계조사표 뒷장에 철하여 함께 제출한다

〈부 록〉

가. 직영과 비직영에 대한 해설

○ 직영차량

차량에 대한 영업권(영업행위)이 조사대상 사업체에 있는 차량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 개별화물은 전부 "직영"으로 처리함

○ 비직영차량

지입제와 같이 차량에 대한 영업권이 개별차주에 있는 차량

○ 직영업체

사업체가 보유한 영업용차량 전부를 당 사업체에서 직접 영업 행위를 하는 것으로 직영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차량의 법적 소유권 및 영업권이 회사에 있는 경우
(회사소유 - 회사경영)
- 차량의 법적 소유권은 회사에 없지만 회사에서 임차등의 방법에 의하여 영업권은 회사에 있는 경우 (타인소유 - 회사경영)

○ 비직영업체(일부직영)

사업체가 보유한 영업용차량중 업체에서 직영하지 않는 차량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법적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 및 영업권은 차주에 있는 경우

○ 완전비직영업체

사업체가 보유한 영업용차량 전부를 차주들이 각각 직접 영업 행위를 하며, 회사에서는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이 전혀 없는 업체를 말한다.

나. 감가상각비 해설

< 일반감가상각 >

- 고정자산은 크게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나눈다.
유형고정자산은 건물·구축물·차량 및 공구·비품 등을 뜻하며 무형고정자산은 특허권·영업권·실용 신안권등을 말한다.
- 고정자산은 경과나 사용에 따라 소모, 파손, 노후되거나 기능의 발전이나 경제변동에 따라 구식화되게 마련인데 이러한 고정자산의 가치감소를 추정계산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자산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자기소유자산은 모두 대상이 된다.
-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데는 취득원가·내용연수·잔존가치 및 감가상각방법을 알아야 한다.
- 취득가격은 통상적으로 그 자산의 매입가격에 인수운임·하역비·보험료·제세공과금 등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때까지 지출한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 가격이다.
- 내용연수는 당해 고정자산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말하는것이 아니고 감가상각율을 정하는 기준에 불과한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각 자산별로 내용연수를 정하고있다.
- 잔존가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끝나서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된 때에도 어느정도의 가치가 남아있게 되는데 이 남아있는 가치를 말한다. 한편 세법에서 유형고정자산

은 취득가액의 10%를, 무형고정자산은 영(零)으로 하고있다.

- 감가상각방법은 유형고정자산은 정액법과 정율법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무형고정자산은 정액법으로 한정되어 있다. 감가상각방법은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cdot (\text{정액법}) = \frac{\text{취득원가} - \text{잔존가치}}{\text{내용연수}}$$

$$\cdot \text{정율법} = \text{미상각잔액} \times \text{정율}$$

$$\text{정율}(\%) = 1 - n \frac{\text{잔존가치}}{\text{취득원가}} \quad (\text{단, } n \text{은 내용연수})$$

< 특별감가상각비 >

- 특별감가상각비는 일반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상한 후 일반상각비의 일정비율을 추가, 감가상각비로 손금을 인정해주는 조세혜택 제도이다. 이는 투자원가를 회수하는 것이이므로 아무리 특별감가상각비계상의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투자원가인 취득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선·항공 등 중요산업의 경우에는 일반감가상각비의 100%를 특별감가상각비로서 추가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 감가상각비 작성요령 >

- 감가상각비는 재무제표 등 각종 장부상의 금액을 기입하되

장부가 없는 개인업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기입.

- 취득원가(구입가격)를 감가상각비의 해설을 참조하여 정액법 및 정율법에 의하여 산출 작성한다.
- 자본적지출이거나 재평가한 경우는 원시취득 가액에 자본적지출 등으로 증가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잔존가치 10%만 남겨놓고 계산하여 작성한다.

◀예>택시의 경우 취득원가가 천만원, 내용년수 4년, 잔존가치는 10%인 백만원이라 할 때 정액법에 따르면
천만원 - 백만원 / 4 = 9 백만원 / 4 = 225만원이 된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4년동안 매년 225만원으로 기입된다.

<부 록> 다. 한국표준산업분류

I. 운수, 창고 및 통신업 (TRANSPORT, STORAGE AND COMMUNICATIONS)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각종 운수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활동과 창고 및 기타 운수관련 서비스 및 통신활동이 포함된다.

● 운수업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철도, 도로, 수상 및 항공운수 시설에 의하여 일정노선 유무를 불문하고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과 터미널시설 제공, 화물운송 대리, 여행알선, 화물창고운영 등의 운수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통신업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 및 우편화물의 접수, 운반, 배달하는 우편사업과 전신·전화 및 기타 통신

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 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이 분류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특정산업활동에 결합된 운송활동은 그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되나, 동일기업체를 위한 장거리운송, 하역, 육상운수, 파이프라인 운송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운수업에 분류된다.

나.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 또는 스튜디오 (9213)

다.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을 제외한 운수장비의 수리 및 개조활동 (35)

라. 도로, 철도, 항구, 비행장등의 건설, 유지수선활동 (4522)

마.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의 유지, 수리활동은 (5020) 또는 (5040) 에 각각 분류

바. 운전자 또는 조작자없이 운수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운수장비의 종류 종류에 따라 (711) 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LAND TRANSPORT ; TRANSPORT VIA PIPELINES)

601 도시간 철도운송업 (Transport via railways)

6010 도시간 철도운송업 (Transport via railways)

60100 도시간 철도운송업 (Transport via railways)

도시간 또는 교외간 철도차량에 의해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철도차량 견인 및 전철활동 등 관련활동이 포함된다.

<포 함>

- 도시간 철도운송
- 여객철도우송 : 도시간
- 화물철도우송 : 도시간
- 냉동 또는 냉장품 화물 철도운송
- 액체 또는 가스화물 철도운송
- 컨테이너 화물 철도운송
- 철도화물운송

<제 외>

- 독립적인 침대차운영 (5510)
- 호텔운영 (5510)
- 독립적인 식당차운영 (5521)
- 도시내 철도운송 (6021)

- 수상운송 (61)
- 철도운수 관련서비스 (630)
- 철도차량의 유지 및 단순한 보수 (6303)
- 통신서비스 (6420)

602 기타 육상운송업(Other land transport)

이 분류에는 도로운송시설, 구역전철, 케이블카등을 포함한 각종 육상운송시설 (도시간 철도 제외)에 의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도로 차량의 유지, 보수 (50)
- 육상운송 보조활동 (6301)

6021 정기노선여객 육상운송업(Other scheduled passenger land transport)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도시내 및 도시간 육상운송시설 (도시간 철도운송업 제외)에 의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운송활동은 여객버스, 삭도차량, 무궤도전차, 도시내 철도 등에 의하여 수행된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버스, 공항버스, 노선관광버스, 케이블카 등에 의한 운송활동이 포함된다.

60211 구역내 철도운송업 (Urban railway transport)

철도차량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내 또는 도시구역내에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지역내 철도운송
- 시내 철도운송
- 지하철 운송 : 도시내
- 전기철도 운송 : 도시내

60212 시외버스 운송업(Inter-urban highway bus passenger transport)

시내버스를 제외하고 도시간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로 버스를 운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시외 정기노선 운송, 여객
- 도시간 정기 여객 운송
- 시외버스 운송
- 정기노선 여객버스 운송
- 직통 여객버스 운송
- 도시간 노선버스 운송
- 도시간 고속버스 운송
- 정기 고속노선 도로 운송
- 고속버스 운행

60213 시내버스 운송업(Urban bus passenger transport)

일정한 도시 또는 읍면의 한정 구역내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로 버스를 운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항버스 및 특정구역 정기순환 미

니버스와 같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정구간을 정기적으로 순환하는
운송시설 운영활동이 포함된다.

<포 함>

- 시내 및 교외 정기노선 운송
- 구역내 노선 여객버스운송
- 노선 여객버스운송 : 도시내, 구역내
- 시내 노선버스운송
- 정기순회 미니버스 운영
- 공항버스 운영

60219 달리분류되지않은 노선여객 육상운송업 (Other scheduled passenger
land transport, n.e.c.)

달리분류되지않은 노선여객 육상운송업으로, 무궤도 고가차량, 케이
블카, 삭도차량등의 교통수단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시내 여객운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무궤도 고가차량 여객운송 : 정기노선
- 케이블카 여객운송 : 정기노선
- 삭도차량 여객운송 : 정기노선
- 관공구역내 정기순환 여객운송
- 학교버스 운영, 대리

<제 외>

- 관광지 또는 유흥목적으로 운행되는 삭도시설 운영 (92499)

6022 비노선여객 육상운송업(Other non-scheduled passenger land transport)

일정한 운행노선을 정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택시, 운전자가 딸린 차량 임대, 전세버스, 유람용 및 기타 수시운행 차량, 인력견인 또는 동물견인차량 등에 의하여 수시로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앰블런스의 운영 (8519)

60221 택시 운송업(Taxicab transport)

소형 또는 중형 승용차에 의하여 통상 주행거리 또는 주행시간을 기준으로 요금을 받고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승용차 임대 (운전자 딸린)
- 택시 운송 : 비노선
- 소형 또는 중형 승용차 운송 : 비노선

60222 전세버스 운송업(Charterbus transport)

일정한 노선없이 수시 계약에 의하여, 버스를 운행하며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버스 임대 (운전자 딸린)
- 비노선버스 운영 : 여객
- 전세버스 운영

60229 달리분류되지않은 비노선여객 육상운송업 (Other non-scheduled passenger land transport, n.e.c.)

달리분류되지않은 비노선여객 육상운송업으로, 일정한 노선없이 동물견인차량, 인력견인차량 등에 의한 여객운송 산업을 말한다.

<포 함>

- 인력견인차량 운영 : 여객운송
- 동물견인차량 운영 : 여객운송
- 비동력차량 운영 : 여객운송

6023 도로화물 운송업 (Freight transport by road)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도로화물차량에 의하여, 각종화물을 운송하는 활동으로서 원목, 가축, 냉동화물, 중기, 벌크화물, 가구 등 다양한 화물 운송활동이 포함되며, 인력견인 또는 동물견인차량에 의한 화물운송과 운전자가 딸린 화물차량의 임대활동이 포함된다.

<제 외>

- 화물 터미널 운영 (6303)
- 운송용 화물 포장 및 검사 (6309)
- 우편물 도로운송 (641)

60231 정기노선 도로화물 운송업(Freight transport regularly scheduled)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각종 도로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0232 특수화물 자동차 운송업(Special freight transport non-regularly
scheduled)
일정한 노선을 정하지않고 부정기적으로 특정화물 운송에 적합한 특수
장치를 설비한 냉동차량, 컨테이너차량, 탱크차량, 크레인 및 기타 특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구역간 또는 구역내 각종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차량구난 및 견인차량의 운영도 여기 포함된다.

<포 함>

- 특수화물 운송업
- 냉장, 냉동화물 운송
- 컨테이너화물 운송
- 탱크로리 운송
- 벌크화물 운송
- 덤프트럭화물 운송
- 원목 운송
- 차량, 중기화물 운송
- 액체화물 운송
- 포크레인 화물 운송
- 액체 및 가스 도로 운송
- 현금 및 귀금속 도로 운송
- 자동차 견인 운송

<제 외>

- 별목장내의 원목운반 (02020)
- 정기노선 도로화물 운송(60231)

60233 일반 전국화물 자동차 운송업(General whole country freight transport)

정기노선을 정하지 않고 전국을 운행구간으로 하여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0234 일반구역 화물 자동차 운송업(General local freight transport)

일정한 사업구역내에서 정기노선을 정하지 않고, 적재 정량이 1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일반구역화물 운송
- 비노선 일반구역화물 운송

<제 외>

- 특수화물 부정기운송, 구역내 또는 구역간 (60232)

60235 일반구역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업(General local cargo pick-up and delivery transport)

일정한 사업구역내에서 노선을 정하지 않고, 적재 정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용달화물 운송, 구역

60236 장의차량 운영업(Hearse operation)

시체를 운구할 수 있는 특수한 설비를 갖춘 장의차량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장의차량 운영

<제외 >

- 묘지개발 및 분양 (70123)
- 장의사가 운영하는 장의차량 (93031)
- 상여 등으로 시체만 운구하는 활동 (93031)

60239 달리분류되지않은 도로화물 운송업(Freight transport by road, n.e.c.)

달리분류되지않은 도로화물 운송업으로 동물견인차량, 인력견인차량 등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동물견인차량 운영 : 화물
- 인력견인차량 운영 : 화물
- 비동력 차량 운송 : 화물

<제 외>

- 포터 및 지게 등 인력에 의한 수화물 운반 (93099)

603 파이프라인 운송업 (Transport via pipelines)

6030 파이프라인 운송업 (Transport via pipelines)

60300 파이프라인 운송업 (Transport via pipelines)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가스, 액체 및 기타 상품을 파이프라인에
하여 운송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이들 상품용 펌프장 운영과 파이프라인
유지관리활동도 포함한다.

<포 함>

- 파이프라인 운송업
- 가스운송 : 파이프라인
- 액체운송 : 파이프라인
- 파이프라인 유지관리
- 펌프장 운영, 파이프라인 운송상품용
- 파이프라인 연료운송
- 파이프라인 상품운송

<제 외>

- 가스를 최종 소비자에게 자영 공급 : 배관 (40201)
- 증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자영 공급 : 배관 (40300)
- 수도 자영 공급 : 배관 (41000)
- 특정산업에 관련된 배관시설 운영은 그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61 수상운송업 (WATER TRANSPORT)

노선 또는 정기여부를 불문하고 여객 또는 화물을 수상운송설비에 의하여 운송하는 활동으로서 견인보트, 관광 또는 순항보트, 유람선 또는 광선, 수상택시 등의 운영활동이 포함된다.

<제 외>

- 선상에서 독립적으로 음식점 및 주점 운영활동은 (552)에 분류되나, 운송활동에 결합, 운영되는 경우는 운송업 분류
- 화물의 적재 및 하역, 보관, 부두운영과 도킹, 수로안내 (도선), 선박구난활동 및 구난선 운영 등의 기타 수상운송 보조활동은 (6304)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된다.

611 해상운송업 (Sea and coastal water transport)

6110 해상운송업 (Sea and coastal water transport)

연근해 및 원양에서 정기 또는 부정기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대 호수내의 수상운송도 포함된다.

<제 외>

- 항만내의 수상운송 (612)

61101 내항여객 운송업 (Coastal water passenger transport)

국내항 간에 선박을 취항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여객수상 운송 : 국내항간
- 수상여객 운송 : 국내항간
- 내항여객선(박) 임대 (승무원 딸린)

<제 외>

- 내항 화물선(박) 임대 (승무원 딸린) (61102)
- 연안 순항 여객선 운영 (항간이동 제외) (61109)

61102 내항화물 운송업(Coastal water freight transport)

국내항 간에 선박을 취항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수상운송 : 국내화물
- 내항화물운송
- 화물수상운송 (국내항)
- 내항화물 선박 임대 (승무원 딸린)

61103 외항여객 운송업(Deep sea foreign passenger transport)

외국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외항여객 운송업

- 여객수상 운송 : 외국항로
- 외항 선박 여객 운송업
- 외항여객 선박 임대 (승무원 딸린)

61104 외항화물 운송업(Deep sea foreign freight transport)

외국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외국화물 운송
- 화물 수상 운송 : 외국항로
- 외항 냉장 및 냉동품 운송업
- 외항 액체 및 가스선박 운송업
- 외항 컨테이너 선박 운송업
- 외항 선박 화물운송업
- 외항 화물선박 임대 (승무원 딸린)

61109 달리분류되지않은 해상 운송업(Sea and coastal water transport, n. e. c.)

달리분류되지않은 해상 운송업으로, 해상 유람선 임대 (조종사 딸린), 예인선 운영 등이 포함된다

<포 함>

- 예인선 운영 : 공해, 근해상

- 유선업 운영 : 연안 (항간이동 제외)
- 유람선 임대 (조종사 딸린), 해상

<제 외>

- 항만내 수로여객 운송 (61201)
- 내륙수로상의 예인선 운영 (61209)
- 항구내의 거룻배 운영 (61209)
- 조난선의 구조예인선 (63044)

612 내륙수상 운송업(Inland water transport)

6120 내륙수상 운송업(Inland water transport)

강, 운하, 항만내 수로에서 보트, 거룻배, 예인선, 바지선, 관광선, 수상택시 등의 각종 선박에 의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 여객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1201 내륙수상 여객운송업(Inland water passenger transport)

강, 운하, 항만내에서 정기 또는 부정기 항간 이동 여객운송을 위한 각종 선박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내륙수상 여객운송
- 여객운송, 강, 운하, 항만내
- 내륙선박 여객운송업
- 관광선 운영, 내륙 항간이동
- 내륙여객선 임대 (승무원 딸린)

61202 내륙수상 화물운송업(Inland water freight transport)

강, 운하, 항만내에서 정기 또는 부정기 화물운송을 위한 각종 선박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내륙수상 화물운송
- 수상화물운송, 강, 운하, 항만
- 내륙화물선박 임대업 (승무원 딸린)
- 내륙수상 냉장 및 냉동품 운송업
- 내륙수상 액체 및 가스 운송업

61209 달리분류되지않은 내륙수상 운송업(Inland water transport, n.e.c.)

달리분류되지않은 내륙수상 운송업으로 내륙수로 유람선 임대 (조종사 린), 예인선운영 및 유선업 등이 포함된다.

<포 함>

- 예인선 운영, 내륙수상
- 유선업 운영, 내륙수상
- 내륙선박 견인 및 예인 서비스업
- 수상택시 운영
- 유람선, 내륙수상
- 유람선 임대 (승무원 딸린), 내륙수상

<제 외>

- 하역업체가 거룻배를 운영할 경우 (63012)

62 항공 운송업 (AIR TRANSPORT)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항공기 또는 항공기 엔진의 분해·수리활동 (3530)
- 우편물 항공 운송활동 (641)

621 정기 항공 운송업 (Scheduled air transport)

6210 정기 항공 운송업 (Scheduled air transport)

62100 정기 항공 운송업 (Scheduled air transport)

일정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면서 국내·외 항공여객,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정기 항공 운송
- 항공여객 운송
- 항공 화물 운송
- 항공 화물 운송, 정기

622 부정기 항공기 운행사업 (Non-scheduled air transport and airplane-rental with operator)

6220 부정기 항공기 운행사업 (Non-scheduled air transport and airplane-rental with operator)

부정기적으로 항공 여객 또는 화물운송 사업과 조종사가 딸린 항공기를 운송 이외의 목적에 주로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2201 부정기 항공 운송업 (Non-scheduled air transport)

부정기적으로 항공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항공여

객 또는 화물운송을 위한 항공기 임대 (조종사 딸린)와 우주선에 의한 운송활동도 여기에 분류된다.

<포 함>

- 부정기 항공 운송
- 항공화물 운송 : 부정기
- 항공여객 운송 : 부정기
- 우주선 운행
- 운송 항공기 임대 : 조종사 딸린

62202 항공기 임대사업(조종사 딸린) (Air plane rental with operator)

조종사가 딸린 항공기운송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임대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항공 광고대행용 항공기 임대 (조종사 딸린)
- 항공 약품살포용 항공기 임대 (조종사 딸린)
- 항공측량용 항공기 임대 (조종사 딸린)
- 조종사훈련용 항공기 임대 (조종사 딸린)
- 항공 방제용 항공기 임대 (조종사 딸린)
- 항공 촬영용 항공기 임대 (조종사 딸린)
- 보도비행용 임대
- 시설물 순시 비행용 임대

<제 외>

- 항공기를 이용하여 직접 특정용역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용역사업 내용에 따라 각각 분류

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SUPPORTING AND AUXILIARY TRANSPORT ACTIVITIES : ACTIVITIES OF TRAVEL AGENCIES)

각종 화물취급, 보관 및 창고시설 운영, 운수사업 유지 서비스, 여행알선 및 대리 서비스, 운수관련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운전자 알선 및 대리 (7491)
- 승용차 임대, 운전자 없이 (7111)

630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Supporting and auxiliary transport activities ; activities of travel agencies)

6301 화물 취급업 (Cargo handling)

운송수단을 불문하고, 화물 또는 여행자 수화물을 운송장비에 적재 또는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3011 항공 및 육상화물 취급업 (Air freight and land freight handling)

철도, 도로 등 각종 육상 운송장비에 화물을 적재 또는 하역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항공화물 취급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포 함>

- 화물 취급업, 육상
- 화물 하역업, 육상 (도로, 철도)
- 화물 취급업, 항공
- 하역업, 육상화물
- 하역업, 항공화물

63012 수상화물 취급업 (Water freight handling)

항구내에서 선박과 부두, 선박과 선박간에 직접 화물을 운반하여 이를 선적 또는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화물 취급업, 수상
- 하역업, 수상화물

6302 보관 및 창고업 (Storage and warehousing)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및 유류, 화학물, 석유, 섬유, 곡물, 냉동물,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관세부과 지역에 설치되는 무역상품 보관시설 운영활동이 포함되며, 이러한 보세 창고는 보세물품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세분항목에 분류한다.

<제 외>

- 벌크상태의 천연 또는 제조가스 저장 시설 운영 (4020)
- 주차시설의 운영 (6303)
- 은행의 안전예금금고 서비스 (6719)
- 영화필름 및 영화용 비데오테이프 보관 (9211)
- 세탁소에서의 의복보관 (9301)
- 수화물 임시보관소 (9309)

63021 보통창고업 (General warehousing)

물자의 보관을 위하여 특수한 시설이 없이 보통 상온에서 저장이 가능한 물자를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보관 창고 운영
- 일반물품 보관 창고 운영

63022 냉장 창고업 (Refrigerated warehousing)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냉장창고 운영
- 얼음보관소 운영
- 냉장 및 냉동품 창고 운영
- 냉동식품 보관
- 냉동물품 보관

<제 외>

- 냉장 또는 냉동물의 보관 목적이 아니고, 수수료에 의하여 위탁된 물품의 냉동처리 활동을 주로할 경우(15489)

63023 위험물품 보관업 (Dangerous goods warehousing)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 등 안전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물품을 저장탱크 또는 야적장에서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가스성 화물 보관소
- 화학물 창고 운영
- 가스포장 화물 창고 운영
- 액체 인화물 보관소
- 위험물 창고 운영
- 가스포장 화물 창고 운영

63024 농산물 창고업 (Farm product warehousing)

곡물 및 기타 농산물을 주로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식품의 벌크상 또는 포장여부를 불문한다.

<포 함>

- 곡물 창고 운영
- 농산물 보관 운영

63029 달리분류되지않은 보관 및 창고업 (Storage and warehousing, n.e.c.)

달리분류되지않은 보관 및 창고업으로 차량 장기보관소 운영, 목재하치장(수면목재창고 포함), 각종 물품의 야적장 운영활동 등이 포함된다. 다만 비축시설 운영업은 비축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적합한 항목에 분류 된다.

<포 함>

- 목재 하치장 운영
- 수면 목재 창고 운영

- 일반 물품 보관 야적장 운영
- 주류 보관 창고 운영
- 차량 보관소 운영

<제 외>

- 위험물 보관시설 운영 (63023)

6303 육상운수 유지 서비스업(Other supporting transport activities)

63031 철도 운수유지 서비스업(Supporting, railway transport activities)

도시내 또는 도시간 철도운송에 관련된 여객 또는 화물터미널 시설운영 및 기타 철도 운수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철도차량 정류장 운영
- 철도여객 터미널 운영
- 철도화물 터미널 운영
- 철도차량 주차장 운영
- 철도운수 유지 서비스

63032 여객 자동차 터미널시설 운영업(Operation of passenger terminal facilities)

여객의 승강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 운영
- 자동차 정류장 운영 : 여객
- 버스 정류장 운영 : 여객

<제 외>

- 주차장 운영 (63035)
- 매표소(승강장) 운영 (63069)

63033 화물자동차 터미널시설 운영업(Operation of freight terminal facilities)

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자동차 정류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화물 자동차 터미널시설 운영
- 자동차 정류장 운영 : 화물

63034 유료도로 운영업(Operation of toll road)

유료도로, 터널, 교량 등의 설비를 수수료를 받고 관리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고가로 운영, 유료
- 교량 운영, 유료
- 터미널 운영, 유료

63035 주차장 운영업 (Operation of vehicle parking facilities)

유개 또는 무개를 불문하고,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시간 주차시키는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주차장 운영

<제 외>

- 차량 장기보관소 운영 (63029)

63039 달리분류되지않은 도로운수 유지 서비스업 (Supporting land transport activities n.e.c)

달리분류되지않은 도로운수 유지 서비스업으로서, 기타 도로 운수유지, 보조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포 함>

- 도로 운수유지 서비스, 기타

<제 외>

- 자동차 세차업 (50203)
- 도로 차량점검 유지 서비스 (5020)

6304 수상운수 유지 서비스업 (Supporting water transport activities)

63041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업 (Operation of harbour and water terminal facilities)

항구, 선창, 도크, 잔교 및 기타 해상 터미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항만시설 운영
-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

63042 수로 안내(도선)업(Pilotage)

항구내 또는 항구외로 선박을 인도하거나 항해 위험지구에서 수로안내 활동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수로 안내 및 정박서비스

63043 선박 청소업(Shipboard cleaning)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선박갑판 및 탱크 등의 청소, 살균, 훈증 소독, 해충구제 및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선박청소 서비스
- 선박소독 및 해충구제 서비스

63044 선박 구난업(Vessel salvage)

원양 및 근해 또는 내륙수로에서 침몰선의 인양, 전복선박의 바로잡기, 좌초한 선박의 부상작업, 침몰선의 화물회수, 조난선의 예인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

63049 달리분류되지 않은 수상운수 및 관련유지 서비스업 (Supporting water transport activities n.e.c.)

달리분류되지 않은 수상운수 및 관련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등대운영
- 운하운영
- 항해조력 서비스
- 수로, 갑문 운영
- 항해 보조 서비스

<제 외>

- 해상터미널시설 운영 (63041)

6305 항공운수유지 서비스업 (Supporting air transport activities)

63051 항공터미널 시설 (Operation of air terminal facilities)

항공여객 또는 화물의 승강, 적하를 위하여 항공터미널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공항운영 서비스업
- 항공터미널 시설 운영

63052 항공기 지상 관리 서비스업 (Ground management of airplane)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지상에서 항공기 예인, 격납고 서비스,

청소 및 관리서비스, 급유점검 및 경상유지 수리 등의 착륙한 기체관리에 관련된 지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항공화물 하역 및 적재활동 (63011)

63059 달리분류되지 않은 항공운수 유지서비스업 (Supporting air transport activities, n.e.c.)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항공운수 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공항설비 운영 서비스 : 항공터미널 제외
- 기권운수 보조 서비스
- 공항지상 서비스
- 비행 관제탑 운영 서비스
- 비행관제 서비스
- 항공교통통제 서비스

<제 외>

- 무선표지 및 레이더 통신소 (6420)

6306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 (Activities of travel agencies and tour operators ; tourist assistance activities)

여행자 및 관광객을 위하여 여행정보, 조언 및 여행일정 계획 등 여행 관련 서비스제공, 숙식 및 운송을 알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행자 안내활동과 매표 대리활동도 포함된다.

<포 함>

- 여행대리
- 여행사 운영
- 여행안내
- 숙식알선
- 매표대리
- 여행알선 및 여행사 운영
- 관광안내 서비스

63061 여행사업 (Activities of travel agencies)

국내외 여행자를 위하여 각종 여행관련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포 함 >

- 여행 대리업
- 여행사 운영업

- 여행 알선업
- 국내 여행사 운영
- 국외 여행사 운영
- 일반 여행사 운영
- 관광 알선업
- 관광 대리업

63069 달리분류되지않은 여행알선업(Activities of travel agencies,n.e.c.)

달리분류되지않은 여행알선업으로서, 여행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여행자 안내활동, 대표대리활동, 음식안내활동 등 특정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관광 안내소
- 대표대리
- 여행자 안내 서비스
- 카풀체계 운영
- 숙박 알선

6309 기타 운수관련 대리 서비스업(Other service allied to transport agency)

화물운송대리 및 중개, 통관업무대리, 선박 및 항공기 중개, 화물포장 및 검수 등 화물운송에 관련된 대리 또는 중개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3091 화물운송 대행업(Freight forwarding)

직접 화물운수 사업체를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각종 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운송을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화물운송 대리

63092 화물중개 및 대리업 (Freight brokerage and agency)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화물운송에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통관 및 관세 중개 서비스, 화물증서 결산 및 화물요금 공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통관 서비스
- 관세 중개
- 화물요금 결산대리
- 화물대리
- 화물중개
- 화물수송 알선
- 통관기록 작성
- 화물증서 작성 및 결산
- 화물운임 정보 서비스

<제 외>

- 화물운송 대행 (63091)

63093 선박 및 항공기 중개업 (Ship and aircraft brokerage and similar services)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항공기의 임대 및 판매에 관련하여 이를 중개 또는 알선해 주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선박 임대 중개
- 선박매매 알선
- 항공기 임대 중개
- 항공기 매매 알선

<제 외>

- 선박임대, 조종사 딸린 (61)
- 항공기 임대, 조종사 딸린 (62)

63094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 (Freight packing, crating, inspection and similar services)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운수화물 포장, 검수, 형량 및 유사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화물 포장, 운수관련

- 화물 검수, 운수관련
- 화물 형량 및 유사 서비스, 운수관련

<제 외>

- 제품 포장 (74950)
- 계량 서비스 (74994)

630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운수관련 대리업 (Other service allied to transport agency, n.e.c.)

달리분류되지않은 운수부대 서비스업으로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가축운송에 따른 임시가축 사육장 운영, 가축형량, 가축 하역 등 관련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동물운송 관리 서비스
- 가축 형량 및 하역 서비스
- 가축운송 관련 서비스



1994년 기준

운수업통계조사표 (도로화물)

※ 이 조사는 운수업부문의 구조변화와 분포, 경영 실태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한 지정통계로서 조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이나 법인·단체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제출된 조사 자료는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에만 이용됩니다.

사업체고유번호	산업분류번호	구 분	행정구역번호	조직형태번호
—				

1. 사업체 개황

(1) 사업체명 _____ (2) 창설년월 _____ 년 _____ 월

(3) 대표자명 _____ (4) 전화번호 _____

(5) 소재지 _____ 시 _____ 구 _____ 동 _____ 읍 _____ 면 _____ 가 _____ 동 _____ 리 _____ 번지 _____ 호

2. 조직형태(해당란에 ○표)

- ① 국가기관 및 공사 ② 회사 법인
 ③ 기타 법인 ④ 개인

3. 사업형태(해당란에 ○표)

- ① 노선화물 ② 특수화물 ③ 일반구역화물
 ④ 용달화물 ⑤ 장의차

4. 자본금 또는 출자금

1994.12.31 현재 납입 완료된 금액 (개인사업체는 해당되지 않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5. 차량 보유현황

- 영업용 이외의 차량은 제외
- 차량보유는 타인소유의 임차운행 차량포함(관리주)
- 경과년수는 차량등록일로부터 1994.12.31 까지 경과된 년수
- 총가동대수: 개인용달 제외
- 총운행일수: 개인용달을 운행한 연간 총영업일수

(1) 기관별차량(대수)

기관별	소유형태 및 경과년수		합 계				
	계	직영비직영	①	②1	③3~5	④5~8	⑤8
(1) 디젤엔진							
(2) 휘발유엔진							
(3) LPG엔진							
(4) 기타							
합 계	((1)+(2)+(3)+(4))						

(2) 톤수별 화물차량(대수)

계	①2.5톤이하	②2.6~4.5	③4.6~8.0	④8.1~11.0	⑤11톤이상

(3) 총가동대수

십만	만	천	백	십	일(대)

(4) 총운행일수

백	십	일

6. 연간 수송실적

- 수송총톤수: 화물차량이 연간수송한 화물의 총톤수
- 수송총거리: 전 보유차량에 의한 연간 총주행거리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1) 수송총톤수(M/T)								
(2) 수송총거리(km)								

7.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 종사자수는 1994.12.31 현재로 기입하며 상용·임시종사자, 병가자, 단기휴가자 및 파업증인자도 포함한다. 단, 3개월이상 장기결근자 및 군복무자와 급여를 단일운수사업체로부터 고정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종사자는 제외된다.
- 정비 및 수리공: 차량의 정비 및 수리를 주된 임무로 당해사업체 공장에서 차량의 정비 및 수리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말한다.
- 단순노무자: 화물의 상·하차와 차량으로부터 창고에 이르는 입·출고작업 및 이에 준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말한다. 단순노무자수는 「연간급여액 ÷ 1인일당 임금 ÷ 300일」의 산식에 의한다.
-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 혹은 그의 가족(동거자 포함)으로서 관련되는 제반업무에 주당 정상작업시간의 1/3이상을 종사하였으나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은 자를 말한다.(개인업체는 반드시 해당됨)
- 급여액: 종사자에게 노무의 댓가로 연간지급된 급여의 총액으로서 봉급, 상여금, 각종수당, 생계보조금, 현물급여 등을 말하며 이의 미불금도 포함한다.
- 종사자의 급여액합계는 조사항목 「8」의 운수비용중 「② 인건비」와 일치되어야 한다.

	① 종사자수(1994.12.31. 현재:명)	② 급여액(연간총액)											
		계	남	여	조	천억	백억	십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차량관계종사자	① 운전기사												
	② 조수												
	③ 정비 및 수리공												
	④ 기타												
	합 계 (①+②+③+④)												
(2) 기타종사자	① 단순노무자												
	② 사무직 및 기타												
	합 계 (① + ②)												
(3)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개인업체에서만 기입)													
	합 계 ((1)+(2)+(3))												

통 계 청

8. 연간 운수수입 및 비용

- 운수수입 : 사업체의 운수활동으로 얻어진 모든 영업수입을 말한다.(영업외 수입 제외)
- 운수비용 : 사업체의 운수활동으로 인하여 지출된 모든 영업비용을 말하며,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운송원가를 포함하여 작성한다.(영업외 비용 제외)
- 영업이익 :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운수수입에서 운수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원	
(1) 운 수 수 입		조사기간중 얻어진 사업체의 모든 영업수입											
(2) 운 수 비	① 연 재 료 비	경 유	영업용차량용 경유사용량의 구입비용										
		휘 발 유	영업용차량용 휘발유사용량의 구입비용										
		L P G	영업용차량용 LPG 사용량의 구입비용										
		기 타	영업용차량용 기타연료 사용량의 구입비용 윤활유(엔진오일, 핸들오일, 브레이크오일)										
	계	경유+휘발유+LPG+기타											
기 타 재 료 비	외부로부터 매입된 부분품으로서 그대로 차량에 부착시켜 그 구성성분이 되는 부속품비(타이어, 튜브, 튜브트 등)												
소 계	연료비+기타재료비												
② 인 건 비	종업원에게 지급된 급여, 임금, 제수당 및 잡급등의 비용(7항 급여액과 일치)												
③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당년도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본 계정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 지급된 퇴직금												
④ 복 리 후 생 비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된 법정복리비, 장학금, 의료보험, 피복비, 보건비, 무료급식 등												
⑤ 감 가 상 각 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⑥ 지 급 임 차 료	건물, 차량 및 운반구												
	토지임차료												
⑦ 보 험 료	자동차, 건물, 산업재해 등에 대한 보험료												
⑧ 세 금 · 공 과 금	자동차·재산·취득·등록세(법인세·소득세 제외), 협회비, 적십자비 등												
⑨ 수 선 비	건물, 수송장비 등 유형고정자산의 수선, 수리를 외부에 의뢰한 경우에 지출한 경비												
⑩ 사 용 료	차량검사료 등												
⑪ 대 손 상 각	받을어음 그밖의 이에 준하는 채권중 회수할 수 없는 금액(경상적인 대손상각비만 기입)												
⑫ 잡 비	수도광열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소모품비, 비영업용차량유지비 및 사고비, 통신비, 여비 등												
합 계	①+②+ +⑪+⑫												
(3) 영 업 이 익	(1)운수수입-(2)운수비용												
(4) 납 부 부 가 가 치 세	매출부가가치세-매입부가가치세												

9. 임대수입

영업외수입증 차량, 토지, 건물 등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임대수입금

	십	억	천	백	십	만	천	원
(1) 토 지								
(2) 건 물 및 구 축 물								
(3) 기 계 장 치 및 기 구								
(4) 차 량 및 운 반 구								
합 계								

10. 유형고정자산

- 장부가액을 기입하며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여 기입한다.
- 임차사용분은 제외하고 임대하여준 것은 포함한다.
- 연초잔액은 94.1.1 현재 감가상각 충당금 누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연간증가액은 신규취득 및 중고 취득하였거나 이를 설치 및 증·개축액을 말하며 건설가계정으로부터 건물이나 기계장치 계정으로 대체되어온 것도 취득으로 간주한다.
- 연간처분 및 손해액(연간감가상각액 포함)은 94년 1년간에 매각·양도·재해·도난 등으로 인한 유형고정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감소액을 말하며, 건설가계정에서 건설완료로 건물이나 기계장치등으로 대체한 것은 건설가계정 감소액에 기입한다.
- 연말잔액은 94.12.31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한 미상각잔액을 말한다.
- 연말잔액 = 연초잔액 + 연간증가액 - 연간처분 및 손해액(연간감가상각액 포함)

	① 연 초 잔 액 (1994.1.1 현재)					② 연간증가액 (취득·대체액)					③ 연간처분 및 손해액 (연간감가상각액 포함)					④ 연 말 잔 액 (1994.12.31 현재)				
	조	천	백	십	억	조	천	백	십	억	조	천	백	십	억	조	천	백	십	억
(1) 토 지																				
(2) 건 물 및 구 축 물																				
(3) 기 계 장 치 및 기 구 · 비 품																				
(4) 차 량 및 운 반 구																				
(5) 건 설 가 계 정																				
합 계 ((1)+(2)+(3)+(4)+(5))																				

적 요

작성년월일	1995.	조사담당자	㉠
작성자소속	전화 : 번호 :	내 검 자	㉡
성 명	㉢	조 사 과 장	㉣

8. 연간 운수수입 및 비용

- 운수수입 : 사업체의 운수활동으로 얻어진 모든 영업수입을 말한다.(영업외 수입 제외)
- 운수비용 : 사업체의 운수활동으로 인하여 지출된 모든 영업비용을 말하며,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운송원가를 포함하여 작성한다.(영업외 비용 제외)
- ※ 외국정부 혹은 외국인에게 지급된 인건비 및 지급임차료, 조세공과는 잡비에 포함한다.
- 영업이익 :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으로서 운수수입에서 운수비용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원
(1) 운 수 수 입	조사기간중 얻어진 사업체의 모든 영업수입											
① 재 비	연 료	경 유	선박용 경유 사용량의 구입비용									
	방 카 A 유	선박용 방카 A유 사용량의 구입비용										
	방 카 C 유	선박용 방카 C유 사용량의 구입비용										
	기 타	선박용 기타연료 사용량의 구입비용										
	계	경유+방카A유+방카C유+기타										
비 소 계	기 타 재 료 비	외부로부터 매입된 부분품으로서 그대로 선박에 부착시켜 사용되는 선박의 부속품비										
	계	연료비+기타재료비										
② 인 건 비	종업원에게 지급된 급여, 임금, 제수당 및 잡급등의 비용(7항 급여액과 일치)											
③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당년도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본 계정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 지급된 퇴직금											
④ 복 리 후 생 비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된 법정복리비, 장학금, 의료보험, 피복비, 보건비, 무료급식등											
⑤ 감 가 상 각 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⑥ 지 급 임 차 료	건물·장비임차료											
	토지임차료											
⑦ 보 험 료	선박, 건물, 산업재해 등에 대한 보험료											
⑧ 세 금 · 공 과 금	선박·차량·재산·취득·등록세(법인세·소득세 제외), 협회비, 적십자비 등											
⑨ 수 선 비	건물, 수송장비 등 유형고정자산의 수선, 수리를 외부에 의뢰한 경우에 지출한 경비											
⑩ 사 용 료 · 수 수 료	입항료·부두사용료·통신사용료 등											
⑪ 대 손 상 각	받을어음 그밖의 이에 준하는 채권중 회수할 수 없는 금액(경상적인 대손상각비만 기입)											
	수도광열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소모품비, 비영업용차량유지비 및 사고비, 통신비, 여비 등											
⑬ 용 선 료	국내선박 용선료											
	외국선박 용선료											
합 계	①+②++⑫+⑬											
(3) 영 업 이 익	(1)운수수입-(2)운수비용											
(4) 납 부 부 가 가 치 세	매출부가가치세-매입부가가치세											

9. 임대수입

영업외수입중 장비, 토지, 건물 등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임대수입금

		십	억	천	백	십	만	천	원
(1) 토 지									
(2) 건 물 및 구 축 물									
(3) 기 계 장 치 및 기 구									
(4) 선 박 및 운 반 구									
합 계									

10. 유형고정자산

- 장부가액을 기입하며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여 기입한다.
- 임차사용분은 제외하고 임대하여준 것은 포함한다.
- 연초잔액은 94.1.1일 현재 감가상각 충당금 누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연간증가액은 신규취득 및 중고 취득하였거나 이를 설치 및 증·개축액을 말하며 건설가계정으로부터 건물이나 기계장치 계정으로 대체되어온 것도 취득으로 간주한다.
- 연간처분 및 손해액(연간감가상각액 포함)은 94년 1년간에 매각·양도·재해·도난 등으로 인한 유형고정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감소액을 말하며, 건설가계정에서 건설완료로 건물이나 기계장치등으로 대체한 것은 건설가계정 감소액에 기입한다.
- 연말잔액은 94.12.31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한 미상각잔액을 말한다.
- 연말잔액=연초잔액+연간증가액-연간처분 및 손해액(연간감가상각액 포함)

	① 연초잔액 (1994.1.1 현재)				② 연간증가액 (취득·대체액)				③ 연간처분 및 손해액 (연간감가상각액 포함)				④ 연 말 잔 액 (1994.12.31 현재)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원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원
(1) 토 지																						
(2) 건 물 및 구 축 물																						
(3) 기 계 장 치 및 기 구 · 비 품																						
(4) 선 박 및 운 반 구																						
(5) 건 설 가 계 정																						
합 계	((1)+(2)+(3)+(4)+(5))																					

적 요

작성년월일 1995. 조사담당자 _____ ㉠

작성자소속 _____ 전화 : _____ 내 검 자 _____ ㉡

성 명 _____ ㉢ _____ 조 사 과 장 _____ ㉣

8. 연간 운수수입 및 비용

- 운수수입 : 사업체의 운수활동으로 얻어진 모든 영업수입을 말한다.(영업의 수입 제외)
- 운수비용 : 사업체의 운수활동으로 인하여 지출된 모든 영업비용을 말하며,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운송원가를 포함하여 작성한다.(영업의 비용 제외)
- 영업이익 :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운수수입에서 운수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만	천	원
(1) 운 수 수 입	조사기간중 얻어진 사업체의 모든 영업수입												
(2) 운 수 소 비	① 재 료 비	경 유	장비용 경유사용량의 구입비용										
		휘 발 유	장비용 휘발유사용량의 구입비용										
		기 타	장비용 기타연료 사용량의 구입비용										
	계	경유+휘발유+기타											
	전 력 비	장비용 전기의 사용비용											
	기 타 재 료 비	외부로부터 매입된 부품으로서 그대로 장비에 부착시켜 그 구성성분이 되는 부속부품											
소 계	연료비+전력비+기타재료비												
② 인 건 비	종업원에게 지급된 급여, 임금, 제수당 및 잡급등의 비용(7항 급여액과 일치)												
③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당년도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본 계정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 지급된 퇴직금												
④ 복 리 후 생 비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된 법정복리비, 장학금, 의료보험, 피복비, 보건비, 무료급식등												
⑤ 감 가 상 각 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⑥ 지 급 임 차 료	건물, 장비												
	토지												
⑦ 보 험 료	장비, 건물, 산업재해 등에 대한 보험료												
⑧ 세 금 · 공 과 금	자동차·재산·취득·등록세(법인세·소득세 제외), 협회비, 적십자비 등												
⑨ 수 선 비	건물, 수송장비 등 유형고정자산의 수선, 수리를 외부에 의뢰한 경우에 지출한 경비												
⑩ 사 용 료	장비 검사료, 면허수수료 등												
⑪ 대 손 상 각	받을어음 그밖의 이에 준하는 채권중 회수할 수 없는 금액(경상적인 대손상각비만 기입)												
⑫ 잡 비	수도광열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소모품비, 비영업용차량유지비 및 사고비, 통신비, 여비 등												
합 계	①+②+ +⑪+⑫												
(3) 영 업 이 익	(1)운수수입-(2)운수비용												
(4) 납 부 부 가 가 치 세	매출부가가치세-매입부가가치세												

9. 임대수입

영업외수입중 차량, 토지, 건물 등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임대수입금

	십	억	천	백	십	만	만	천	원
(1) 토 지									
(2) 건 물 및 구 축 물									
(3) 기 계 장 치 및 기 구									
(4) 차 량 및 운 반 구									
합 계									

10. 유형고정자산

- 장부가액을 기입하며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여 기입한다.
- 임차사용분은 제외하고 임대하여준 것은 포함한다.
- 연초잔액은 94.1.1 현재 감가상각 충당금 누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연간증가액은 신규취득 및 중고 취득하였거나 이를 설치 및 증·개축액을 말하며 건설가계정으로부터 건물이나 기계장치 계정으로 대체되어온 것도 취득으로 간주한다.
- 연간처분 및 손해액(연간감가상각액 포함)은 94년 1년간에 매각·양도·재해·도난 등으로 인한 유형고정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감소액을 말하며, 건설가계정에서 건설완료로 건물이나 기계장치등으로 대체한 것은 건설가계정 감소액에 기입한다.
- 연말잔액은 94.12.31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한 미상각잔액을 말한다.
- 연말잔액=연초잔액+연간증가액-연간처분 및 손해액(연간감가상각액 포함)

	① 연 초 잔 액 (1994.1.1 현재)				② 연간증가액 (취득·대체액)				③ 연간처분 및 손해액 (연간감가상각액 포함)				④ 연 말 잔 액 (1994.12.31 현재)							
	조	천	백	십	억	조	천	백	십	억	조	천	백	십	억	조	천	백	십	억
(1) 토 지																				
(2) 건 물 및 구 축 물																				
(3) 기 계 장 치 및 기 구 · 비 품																				
(4) 차 량 및 운 반 구																				
(5) 건 설 가 계 정																				
합 계																				
((1)+(2)+(3)+(4)+(5))																				

적 요

작성년월일 1995. 조사담당자 ㉠

작성자소속 전화 : 내 검 자 ㉡

성 명 ㉢ 조 사 과 장 ㉣